

2022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발전연구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발전연구회 귀하

남창진, 박석, 유정인, 이봉준, 이새날, 임춘대, 신동원, 최진혁

이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2.

- 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한상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 공동연구원 : 최영훈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황성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강사)
서정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 자문위원 : 이희창(한양여자대학교 교수)
김종래(대진대학교 교수)

(요약문)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상우

요 약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내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갈 의무를 가진다. 현행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통제하는 권한이다. 특히, 기관대립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지방의회에 보다 더 강화된 집행부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제도상,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약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 처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관련 부처의 개선조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포함한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7일간 조사 기간을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작성 및 수집은 설문조사 전문 플랫폼인 'Moatform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198명이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0명(전체 응답자의 26.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36명(19.0%), 서울특별시 본청 공무원 73명(38.6%)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 공공기관 임직원 30명(15.9%)으로 구성되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한 조사대상자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빈도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189명의 68.8%(130명)가 ‘집행부의 감시 및 통제’라고 응답했으며, 12.2%(23명)는 ‘의원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10.1%(19명)는 ‘자치단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6.3%(12명)은 ‘주민의 이익반영’을, 2.6%(5명)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대상자 과반인 68.8%가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39.2%(74명)는 ‘예산 비효율’을, 근소한 차이로 38.6%(37명)는 ‘잘못된 정책 방향’, 10.1%(19명)는 ‘법령/규정 위반’, 7.9(15명)은 ‘근무행태상 비위나 부정’, 4.2%(8명)은 절차 미준수를 지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설문조사 결과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 감사의 절차에 대한 피감기관 의견 반영, 감사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정보의 비밀 유지, 의원의 감사 전문성, 감사가 정해진 규정대로 준수, 행정업무 개선의 도움 정도, 자료 제공 비협조 정도, 수감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강한 제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본청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감사 시간의 충분성,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의 관련성, 감사 지적에 따른 업무추진 위축 정도, 감사와 무관한 질문 정도에 대한 인식은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본청 공무원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증언 및 의견진술의 원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반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정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 도움 정도, 감사 시기의 조정 필요성, 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비협조 정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중복감사 정도, 관계없는 자료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의원은 낮게 나타났으나 의회사무처 공무원과 집행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감사 기간 연장 필요성, 감사 보좌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은 높게 나타났으나 의회사무처 공무원과 집행부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감사 시간과 기간이 짧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원들은 현행 감사를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현행 감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이 대체로 비협조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여전히 감사와 무관한 질문, 중복감사, 관계없는 자료요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현행 연간 14일의 감사기간에 대해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 기간 및 횟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상시감사, 수시 감사제도의 도입 검토의견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양이 엄청나게 많기도 하지만 업무의 성격이 예산을 수반하는 집행업무가 많다. 이의 검토·확인도 중앙부처의 굵직한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적이고 복잡한 도시행정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감사시기가 연말에 가까운 정기회 기간 동안 1차례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발견이 어려우며,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에 의한 감사는 연 2회로 하고, 시기와 기간은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감사 방법 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전체 서울시 감사대상기관을 매년 감사하려고 하기보다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2년에 한 번 실시한다든지, 전체감사 대신 표본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의회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문답변 형식, 현장확인 방법, 서류감사 등이다. 감사대상 사무에 따라 어떠한 감사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질문답변형식을 중심으로 하는 감사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더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 현장행정을 직접 감독한다는 데 그 의의가 더 크기 때문이다.

대체로 응답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활용하는 정보매체가 주로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의원과 의회사무처가 스스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정책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의원 정책연구회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중점감사사항에 대한 연구회 모임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자료 검토가 요망된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입법, 예산, 행정사무감사, 청원 및 민원처리 등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의정보좌인력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주장과 노력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 환경, 보건, 지역발전 등의 행정 및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의정사무의 확대, 그리고 규모면에서 전체 국가예산의 약 10분의 1을 다루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보좌인력은 집행부나 국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갈수록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4년 임기의 정치적 대표인 의원들의 정보와 자료 수집 방법, 의정활동 시간, 정책적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회 각 정책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을 포함한 의정보좌기구의 기능과 인력확충이 필요한 과제이다.

피감기관인 집행부는 의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답변을 나열하여 초점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평상시에 충분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수행해 온 직무가 과연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로부터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나, 자신이 알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나 행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여전히 감사와 무관한 질문, 중복감사, 관계없는 자료요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배려와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가 과거에 일어난 행위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사결과에 의해 밝혀진 잘못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시정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의미가 크다.

요컨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비판 감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동반자(同業者)로서의 기능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행정과정에 민의와 정책적 아이디어를 투입하는 정책 공론장(共論場)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감사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과 태도의 개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목 차

I . 연구개요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II . 행정사무감사의 본질	3
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3
2. 감사유형	3
III . 의회 인력 조직 및 감사관련 규정	6
1. 조직 및 인력	6
2. 의회 의원	7
3. 의회사무처	8
4. 관련 규정	15
IV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	23
1. 주요 안건 처리 내용 및 결과	23
2. 행정사무감사 처리	24
V .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 조사	27
1. 조사개요	27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0

3. 분석 결과	31
4. 분석 결과 종합	63
VI.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69
1. 의회와 집행부간의 인식 차이	69
2. 감사 시간/기간의 불충분	69
3. 감사자료의 불충분	69
4.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비협조	69
5. 집행부 측의 의견	70
VII. 행정사무감사의 개선방안	71
1. 감사 기간 횟수 확대 검토	71
2. 감사 방법 및 정보 채널의 다양화	71
3. 감사의 전문성 제고	72
4. 의정보좌인력의 확충	72
5. 감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협력관계	73

표 목 차

〈표2-1〉 유형별 지방 감사제도	3
〈표2-2〉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5
〈표3-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구성	8
〈표3-3〉 사무처 정·현원(시간선택제임기제 별도)	9
〈표3-4〉 부서별 기능	10
〈표3-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세부 업무	11
〈표3-6〉 주요 감사사항(공통)	21
〈표4-1〉 감사대상 선정 기관 및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현황	23
〈표4-2〉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24
〈표5-1〉 설문조사 배포 및 결과	28
〈표5-2〉 설문조사 항목 및 측정 도구	29
〈표5-3〉 응답자 신분	30
〈표5-4〉 신분에 따른 감사목적 결과	32
〈표5-5〉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	34
〈표5-6〉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	35
〈표5-7〉 감사 절차에 대한 피감기관 의견 반영	36
〈표5-8〉 감사 중 습득한 정보 비밀유지	37
〈표5-9〉 의원의 감사전문성	39
〈표5-10〉 감사규정 준수	40
〈표5-11〉 감사 시간의 충분	41
〈표5-12〉 집행기관의 제출자료의 관련성	42
〈표5-13〉 증언 및 의견진술 원활	44

〈표5-14〉 행정업무 개선의 도움 정도	45
〈표5-15〉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반영 정도	46
〈표5-16〉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정도	47
〈표5-17〉 감사 지적에 따른 업무추진 위축 정도	49
〈표5-18〉 지방의회 권한 강화 도움 정도	50
〈표5-19〉 감사와 무관한 질문 정도	51
〈표5-20〉 중복감사 정도	52
〈표5-21〉 관계없는 자료요구 정도	53
〈표5-22〉 자료제공 비협조 정도	55
〈표5-23〉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비협조 정도	56
〈표5-24〉 감사 시기 조정의 필요성	57
〈표5-25〉 감사 기간 연장 필요성	58
〈표5-26〉 감사 보좌인력 확충 필요성	59
〈표5-27〉 수감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강한 제재 필요성	61
〈표5-28〉 전문성 강화 교육 필요성	62
〈표5-29〉 감사에 대한 인식 평균비교(3-25문항)	67

그 립 목 차

〈그림 3-1〉 서울특별시의회 조직도	7
〈그림 3-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조직도	8
〈그림 3-3〉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21
〈그림 5-1〉 신분별 구성	31
〈그림 5-2〉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	32
〈그림 5-3〉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	33
〈그림 5-4〉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 평균값	35
〈그림 5-5〉 감사의 절차에 따른 피감기관 의견반영 평균값	37
〈그림 5-5〉 감사중 습득한 정보 비밀유지 평균값	38
〈그림 5-6〉 의원의 감사 전문성 평균값	38
〈그림 5-7〉 감사규정 준수 평균값	40
〈그림 5-8〉 감사 시간의 충분 평균값	42
〈그림 5-9〉 집행기관 제출자료의 평균값	43
〈그림 5-10〉 증언 및 의견진술 원활 평균값	43
〈그림 5-11〉 행정업무 개선의 도움 정도 평균값	45
〈그림 5-12〉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반영 정도 평균값	47
〈그림 5-13〉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정도 평균값	48
〈그림 5-14〉 감사 지적에 따른 업무추진 위축 정도 평균값	48
〈그림 5-15〉 지방의회 권한 강화 도움 정도 평균값	50
〈그림 5-16〉 감사와 무관한 질문 정도 평균값	51
〈그림 5-17〉 중복감사 정도 평균값	53
〈그림 5-18〉 관계없는 자료요구 정도 평균값	54

〈그림5-19〉 자료제공 비협조 정도 평균값	54
〈그림5-20〉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비협조 정도 평균값	56
〈그림5-21〉 감사 시기 조정의 필요성 평균값	58
〈그림5-22〉 감사 기간 연장 필요성 평균값	59
〈그림5-23〉 감사 보좌인력 확충 필요성 평균값	60
〈그림5-24〉 수감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강한 제재 필요성 평균값	61
〈그림5-25〉 전문성 강화 교육 필요성 평균값	62
〈참고문헌〉	74
〈부록〉 설문지	75

I.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방행정이 더욱 충실하게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등의 행정이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이다.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공공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정부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 여부를 판단하고, 사무처리 과정의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실질적 목표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 아직도 상당한 제약요인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 이면서도 집행부, 이해관계인들과의 상호관계가 포함된 동태적 작용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운영 행태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권, 재정권, 청원권 등과 같은 권한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행정사무감사의 인식에 관한 최근의 실증적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제도의 운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당면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제도상,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약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 처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서울특별시의회 와 집행부, 그리고 관련 부처의 개선조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방의회의 역할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제10대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 2018년 - 2022년
- 대상적 범위 :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②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③ 서울

특별시 본청 공무원, ④ 서울특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 공공기관 임직원

2) 내용적 범위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한 문헌 고찰
- 2018년-2022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 분석
- 2018년-2022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운영 실태 분석
-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 공무원, 이해관계인의 인식 설문조사
- 행정사무감사 제도 및 운영상의 실효성 제약요인 분석
- 행정사무감사 제도 및 운영상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3) 연구의 방법

- 기초조사: 문헌검토, 법령검토, 선행연구검토
- 실증조사 및 분석 : 설문조사, 양적, 질적 분석
- FGI : 학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공무원, 이해관계인 중 인터뷰
- 자문회의: 연구진 연구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Ⅱ. 행정사무감사의 본질

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내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켜나갈 의무를 가진다. 현행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통제하는 권한이다.¹⁾

특히, 기관대립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지방의회에 보다 더 강화된 집행부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집행부를 통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집행부를 통제하여 그릇된 행정행태를 시정하고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강화된 통제장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감사유형

〈표 2-1. 유형별 지방 감사제도〉

구분	주체	유형 (주기)	감사 범위, 대상기관 및 방법	법적근거
중앙 수준	국 회	국정감사 (1년)	특별시광역시 도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소관 상	「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

1) 이황수, “지방의회 사무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1, p. 11.

2) 오열근, “지방공사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논문집 제29집 인문·사회과학, 1995, pp. 383-392.

구분	주체	유형 (주기)	감사 범위, 대상기관 및 방법	법적근거
지방 수준	국정조사 (수시)	국정조사 (수시)	임위별) 사업 감사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시군구 감사 실시 국정조사의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특정 사안 등에 대해 실시	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정기감사 (2년) 특정감사, 성과감사 등 (수시)	지자체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해 회계검사 지자체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해 회계검 사 및 직무감찰 실시 지자체 사무의 합법성 및 합 목적성까지 감사	「헌법», 「감사원법」
	중앙 부처	정부합동감사 (2년)	지자체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감사 실시. 단,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특정, 복무, 부분 등 (수시)	중앙부처 간 감사 중복 등의 비효율성을 시정 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주무부가 2년의 범위 에서 정부합동감사 실시	
	시·도	종합감사 (2~3년)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 구의 감사대상사 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실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행정감사규 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부분감사, 특정감사 (수시)	감사 주기는 간 감사 중복 등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체계획 하에 상이.	
지방 의회	행정사무감사 (1년) 행정사무조사 (수시) 결산검사 (1년)	자치 및 위임사무(국회 직접감사사항 제외) 전반의 정책 집행기관, 소속기관, 하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위임·위탁사무기관단체 (본회의 의결) 시·도에서는 14일, 시·군·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감사·결산검사 실시	「지방자치법», 지자체별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또는 규정, 규칙 등	
	지방 자치 단체	자체감사, 하부기관감사 (수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 방자 치단체에 대한 행 정감 사규정」 등

출처: 감사원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도에 관한 이슈분석」, 2017, p. 14.

〈표 2-2.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실시시기	정기감사 정례회 중 실시	필요할 때
기간	광역의회 : 10일 → 14일 기초의회 : 7일 → 9일	본회의로 의결
대상	행정사무 전반	특정 사무 또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성격	회의가 아니라 활동	회의가 아니라 활동
대상사무	고유사무 및 모든 위임사무 (국회 또는 시·도의회 감사 대상은 제외)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제외)
규정	법, 시행령, 조례	재적의원의 1/3 이상 요구와 본회의에서 의결로 조사여부 결정

출처: 유한경.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의원과 공무원의 인식비교: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16.

Ⅲ. 의회 인력 조직 및 감사관련 규정

1. 조직 및 인력

1) 서울특별시의회 구성

서울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 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 5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에 의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을 발표하여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수립 전까지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되어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³⁾

정부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지방 의회의원 선거의 연기 및 한국전쟁 등의 우여곡절로 계속 연기되어 오다 1956년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 에 따라 1956년 8월 13일 민선 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의원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되었으며, 1960년 8월 12일 의원 임기만료일까지 총 8회의 정기회와 37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제2대 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의원 정수 54명으로 구성되어 연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되었다. 제2대 의회 해산 이후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310호)으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7월 8일 의원정수 132명으로 구성된 제3대 의회를 개원, 임시회 29회, 정기회 4회를 개최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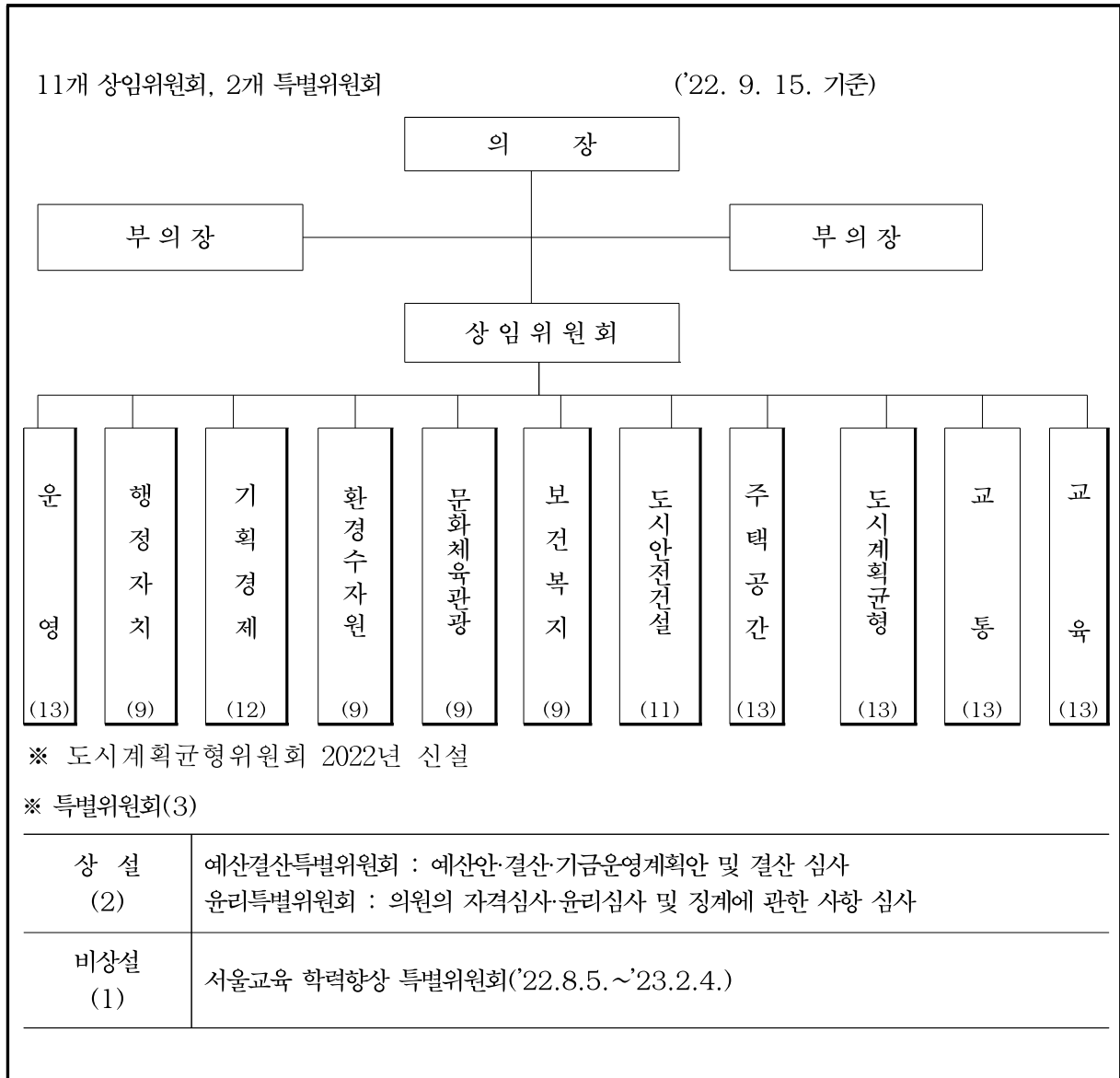
이후, 제10대 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18회, 정례회 8회를 개최하였다. 제11대 의회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일 의원정수 112명(지역구 101, 비례대표 11)으로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⁵⁾

3)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publish/view.do?menuId=001001002001>),
검색일: 2022년 11월 10일.

4)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publish/view.do?menuId=001001002001>),
검색일: 2022년 11월 10일.

5)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publish/view.do?menuId=001001002001>),
검색일: 2022년 11월 10일.

〈그림 3-1. 서울특별시의회 조직도〉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31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

2. 의회 의원

현재 구성된 제11대 의회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일 의원정수 112명(지역구 101, 비례대표 11)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표 3-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구성〉

구분	제10대 의회 (2018년 ~ 2021년)	제11대 (2022년~)
임기	2018. 7. 1 ~ 2022. 6. 30	2022. 7. 1 ~ 2026. 6. 30
의원정수	110	112
지역구	100	101
비례	10	11
정당 (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 102 자유한국당 : 6 바른미래당 : 1 정의당 1	국민의힘 : 76 더불어민주당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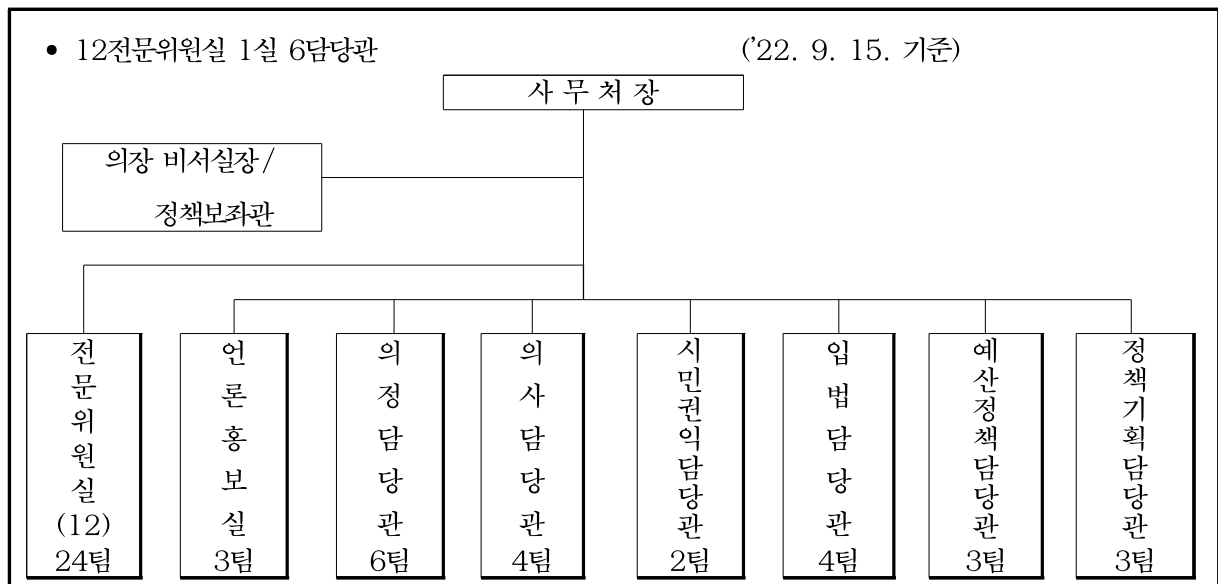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publish/view.do?menuId=001001002002>),
검색일: 2022년 11월 10일.

3. 의회사무처

1) 조직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2022년 12월 1일 현재, 1처장, 6담당관, 1실, 11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실은 언론홍보실, 6담당관은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조직도〉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31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

2) 인력

〈표 3-3. 사무처 정·현원(시간선택제임기제 별도)〉

구분	합계	일반직								별정직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소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소계	4급	5급이하	소계	개방형(1,4호)	5급		6급이하
			4급	5급	6급이하	5급	6급이하										
정원	401	233	6	29	144	1	28	4	21	9	2	7	159	14	21	124	55
현원	368	223	5	25	138	1	25	4	25	6	2	4	139	14	18	107	27
과부족*	△33	△10	△1	△4	△6	-	△3	-	+4	△3	-	△3	△20	-	△3	△17	△28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31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

*결원현황 : 33명

- 일반직(10명) : 의사담당관(4급) 1명, 재무회계팀장(5급) 1명 등
- 별정직(3명) : 의장 비서관(5급) 1명, 의장 비서 2명(8급 2명) 등
- 임기제(20명) : 주공 의안심사지원팀장·교통 전문위원(5급) 2명, 입법지원요원·정책협력지원요원 등(6·7급) 13명 등

직군별 분류 : 현원 395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7명 포함)

- 별정직·임기제:172명 (별정직 6, 개방형 14, 일반임기제 125, 시간선택임기제 27명)
- 행정직군:168명 (행정 124, 세무 1, 전산 7, 사서 3, 사회복지 2, 속기 20, 방호 11)
- 기술직군: 26명 (기계 7, 전기 5, 토목 2, 건축 3, 방송통신 6, 운전 3)
- 관리운영직군: 25명 (사무운영 22, 전기운영 1, 통신운영 1, 기계운영 1)
- 전문경력관: 4명 (영상촬영제작 2, 편집 2)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31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

3) 부서별 기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부서의 주요 기능과 업무는 〈표 3-4〉와 같다.

〈표 3-4. 부서별 기능〉

부 서	주 요 업 무
전문위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의안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에 관한 사항 -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 - 의안·청원관련 자료수집·연구·검토 등에 관한 사항
언론홍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언론 보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시의회소식지 및 영상홍보물에 관한 사항 - 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 SNS 운영 및 연설문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조직, 예산, 결산, 계약,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원 등록, 후생지원 등 신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원 국제교류, 표창 등에 관한 사항 - 청사시설물 유지, 청사경비,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운영, 본회의 일정 및 회의진행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회교실 및 본회의장 방청·참관 등에 관한 사항 - 의안·청원 및 의원요구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정보화사업, 회의록 작성·배부 등에 관한 사항
시민권익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민원접수·상담·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및 시의회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및 제도개선, 현장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 의정모니터 운영, 의회신문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입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정책지원, 정책위원회 및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입안지원, 의회관련 쟁송, 입법·법률고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입법조사회답 등에 관한 사항
예산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교육청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시·교육청 사업평가 및 재정소요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정책기획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지원관의 채용,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정책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31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

〈표 3-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세무 업무〉

구분	세무 업무
언론홍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 출입기자, 언론사 등 언론관계 총괄 - 기자회견, 각종 행사 및 간담회 등 시의회 대언론 관련 업무 - 의정활동 관련 여론 동향 파악, 보도사항 검색 전파 등 - 언론매체 광고 계획 수립 및 추진 - 언론사 취재 지원 및 기자실 운영 - 언론사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 - 의장 연설문, 축사, 각종 메시지 등 인사말씀 작성
언론홍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서울의회 발행에 관한 사항 -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사외벽게시판, 상임위게시판 등 홍보 - 뉴미디어 홍보전략 사업개발 및 추진 - 홍보책자 및 의정백서 제작 -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언론홍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방송 체계 구축 및 시행 -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홍보영상물 기획제작 - 의정활동 사항 생방송 제작 및 송출 - 의정활동 관련 방송 영상물 기획 및 제작 - 방송 홍보 및 방송사 협력사업 기획-시행 - 의정활동 영상기록 제작-관리 -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의회 관련 정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 - HD생방송 통합시스템·아카이브시스템·디지털 전광판 운영 및 관리
의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 개원 준비에 관한 사항 - 의원 등록·사직 등 신상관리 및 교육연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의원 관련 각종 행사 및 의원연구실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정연수원 신설에 관한 사항 - 의장, 사무처 공식행사 등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 사무처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자료 처리 등 국회, 시의회 관련 업무 - 의회소관 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 - 청사시설의 경호 및 방호, 당직업무 -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 시의회 공용공간 대관에 관한 사항 - 공용차량 배차 등 관리,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업무
인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 조직·정원 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일반직, 별정직 인사관리(전보, 근평,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 - 임기제공무원(개방형 포함) 채용 및 인사관리 - 복무관리 및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 - 직원 상훈, 표창(직원, 부서·팀)에 관한 사항 - 공무원 교육훈련, 국내외 연수 등에 관한 사항 - 보수(연금), 수당, 연말정산, 4대 보험 등 관련 사항 - 직원 후생(선택적복지, 연수원·콘도, 동호회 등) 관련 사항 등
재무회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 의원 관련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각종 계약 및 조달물품 구매 - 지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의회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기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
교류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및 국내 교류에 관한 사항 총괄 -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상호결연도시 방문, 초청에 관한 사항 - 의회 국제교류 관련 통번역 -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운영 - 의원 국외공무활동에 관한 사항 - 공무국외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타시도의회, 기관 교류(방문), 협력(MOU 체결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표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사항
의회윤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도 운영 -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시행 - 의원 겸직(변경) 신고 관리 및 공개 처리 - 의원 및 직원 재산등록, 병역사항, 외부강의, 선물 신고 관리 - 의원 및 직원 주식 매각, 백지신탁, 직무연관성, 고지거부 신고·심사 관리 - 서울특별시의회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 심사 관리
시설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청사관리, 유지보수 - 건축물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 전기설비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 냉난방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 통신·방송·음향설비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 승강기·소방설비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등
의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 본회의장 사용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의안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의원요구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
	의정정보화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의원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U의회시스템 구축(의원요구자료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회의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회의록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 권익 담당관	민원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에 관한 사항 - 민원현장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 부서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부서 주요 업무계획 총괄 -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관련 업무 - 부서 예산 및 서무 업무
	민원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관련 업무계획 수립 및 각종 현안 업무 보고 - 의회신문고 운영 및 민원처리 시스템 개발 - 의장에게 바란다 운영 및 관리 - 민원해소자문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원 현장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민원 통계분석 및 민원처리(갈등조정) 우수사례 홍보 - 민원접수 상담 및 처리결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 민원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기능 개선 - 민원 재발방지 방안 마련, 제도개선안 마련
입법 담당관	입법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위원회 운영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구분	세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 부서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부서 주요업무계획 총괄 -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등 시의회, 국회 관련 업무 - 부서 예산 및 일반 사무업무
	법제지원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규 입안지원 - 의회 관련 쟁송업무의 처리 - 입법·법률고문 운영 -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간
	법제지원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관련 의정활동 지원 - 지방분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개최 - 지방분권 관련 홍보사업 - 입법정책조사분석
	의정자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및 관리 - 도서·비도서 구입(자료선정위원회) 및 기증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전자책, 영상자료, 국내외 연속간행물 및 학술DB 등 - 수집자료 정리 및 DB 구축(서지·의회발간물 원문 등) - 자료 대출·반납, 문화공간 운영 등 열람서비스 - 의정 지원 전문정보검색서비스 - 국회도서관 등 타 도서관과 정보 공유 협력 추진
예산 정책 담당관	예산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예산안·결산 토론회 운영 - 주요 업무계획, 조직, 인사, 일반사무 및 부서 예산회계 총괄 - 의안의 비용추계 및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 국내외 재정정책 관련 등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예산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소관사무와 관련한 조사 및 분석 - 시·교육청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공사, 공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에 관한 사항 - 통합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 관련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추계세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의 비용추계 및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시스템 활용 및 운영) -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 재정분권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및 교육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산사업 효율성 평가 - 청년 학술 공모전 운영

구분		세부 업무
정책 기획 담당관	정책기획팀	- 정책지원관 임용 계획 수립 - 정책지원관 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 교육에 관한 사항 - 부서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1팀	- 의원별 협력 및 조정업무, 정책지원업무 - 의원의 의정업무 지원 - 개원 및 원구성 관련 행정지원업무 - 서울시, 교육청 등 대외협력 업무지원 - 국회 및 중앙정부 등 정책협력 업무 지원 등
	정책지원2팀	- 의원별 협력 및 조정업무, 정책지원 업무 - 의원의 의정업무 지원 - 개원 및 원구성 관련 행정지원업무 - 서울시, 교육청 등 대외협력 업무지원 - 국회 및 중앙정부 등 정책협력 업무 지원 등
전문위원실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 열린의회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에 한함) - 의원전체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에 한함) -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publish/view.do?menuId=001001008002>),
검색일: 2022년 11월 10일.

4. 관련 규정

1) 「지방자치법」 /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

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2년 12월 1일.

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조사의 범위)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조사의 장소) 감사·조사활동은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피감사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1.3.17>

제5조(감사·조사에 대한 책임)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6조(사무보조)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전문위원 등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 "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처 직원에게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사무보조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사무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되, 알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자료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0조를 따

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법 제49조제4항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의 출석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쓴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한 기준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과태료부과)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6항부터 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11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2년 12월 1일.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3.8>

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③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24>

④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2.2.24>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 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⑩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동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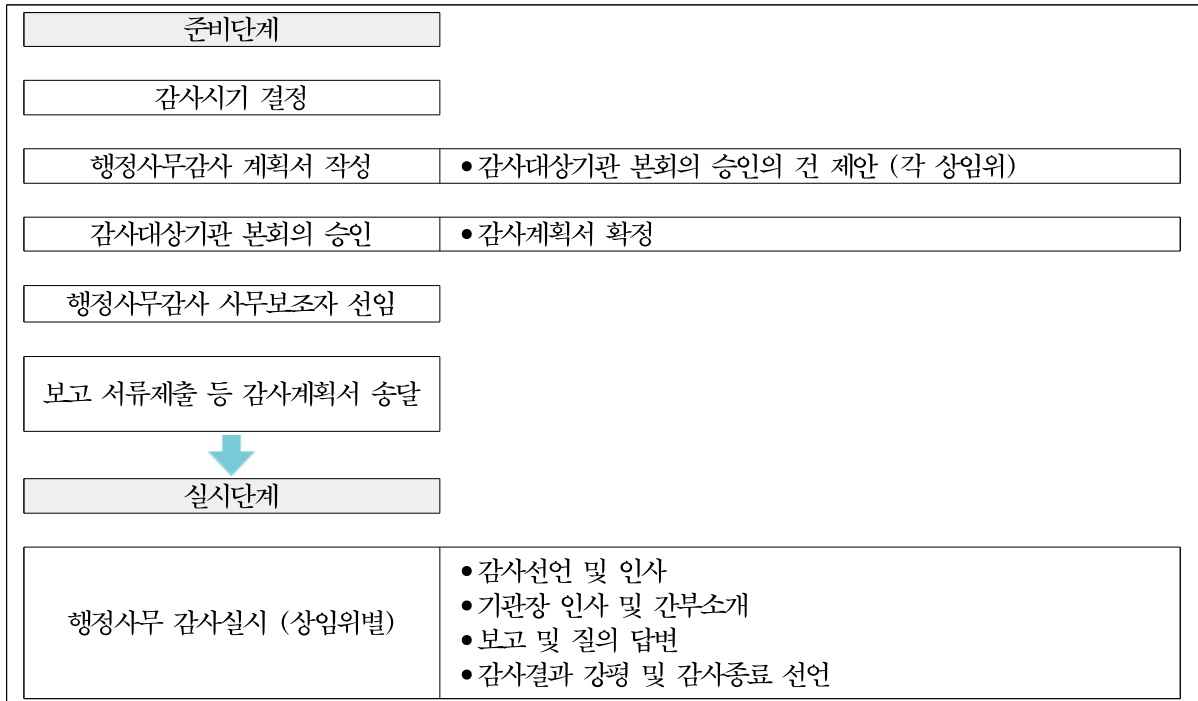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2년 1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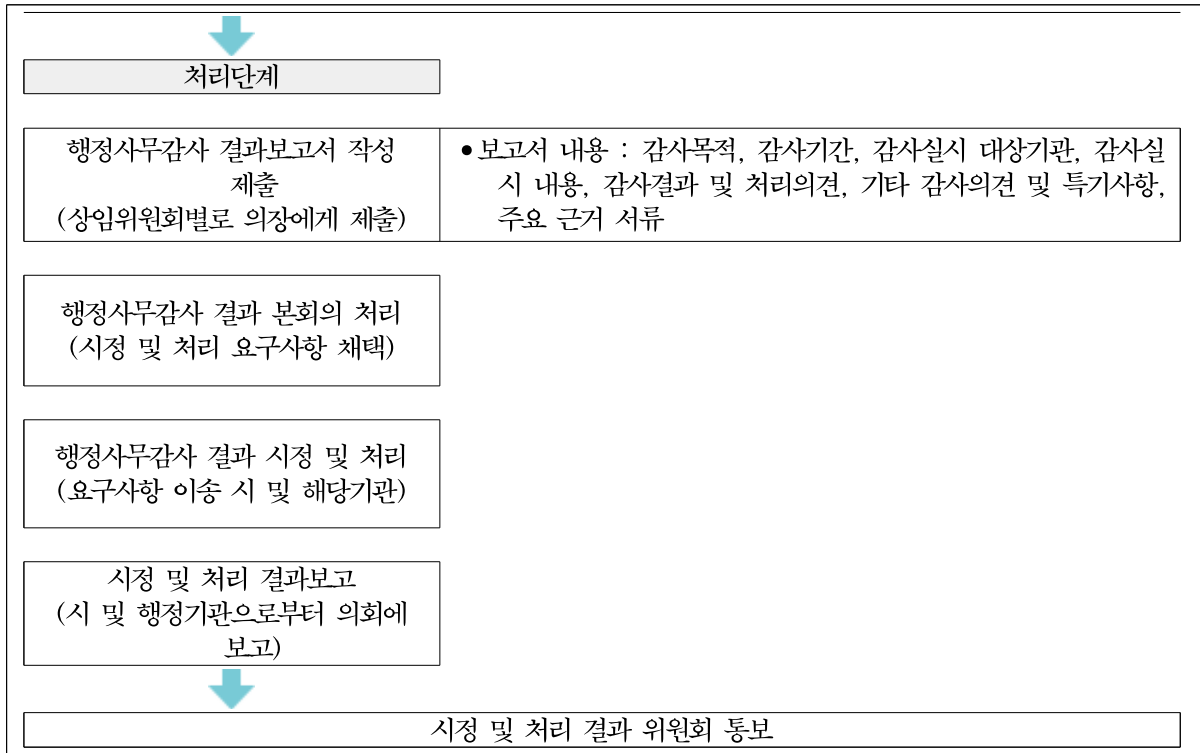
〈표 3-6. 주요 감사사항(공통)〉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 서울특별시 > ○ 직속기관 ○ 본청, 실·국·본부 ○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 공 기 업 ○ 출자 및 출연기관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 ○ 교육청 ○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 보고·청취 ○ 시책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현황 ○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

〈그림 3-3.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publish/view.do?menuId=001001006>),
 검색일: 2022년 11월 10일.

IV.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

1. 주요 안전 처리 내용 및 결과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까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공기업, 출자 및 출연기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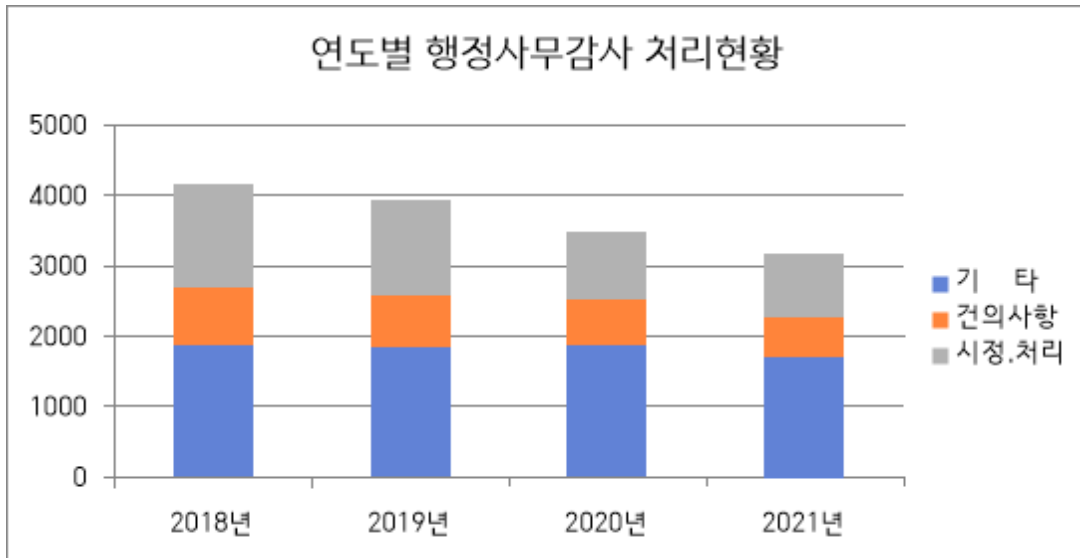
〈표 4-1. 감사대상 선정 기관 및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현황〉

감사기간	구분	계	운영	행정치	기획재	환경자	문화교육	보건지	도시전	주공	도시	교통	교육
				자	정	수원	관	복	안	공	계	통	육
				치	정	원	관	지	건	공	획	통	육
				정	정	원	관	지	건	공	획	통	육
				정	정	원	관	지	건	공	획	통	육
2018년 11.2~11.15 (14일간)	계	232	3	23	19	27	13	45	44	2022년 상임위원회 신설	6	4	24
	위원회의결	154	3	10	7	27	7	7	41		6	4	42
	본회의결	78	-	19	12	-	6	38	3		-	-	-
2019년 11.14~11.17 (14일간)	계	247	3	20	19	27	13	68	44		7	4	42
	위원회의결	159	3	13	8	27	7	7	41		7	4	42
	본회의결	88	-	7	11	-	6	61	3		-	-	-
2020년 11.03~11.16 (14일간)	계	226	3	17	19	27	13	50	44		7	4	42
	위원회의결	160	3	13	10	27	6	7	41		7	4	42
	본회의결	66	-	4	9	-	7	43	3		-	-	-
2021년 11.02~11.15 (14일간)	계	236	3	17	21	27	13	61	43		5	4	42
	위원회의결	160	3	13	11	27	6	7	42		5	4	42
	본회의결	76	-	4	10	-	7	54	1		-	-	-
2022년 11.02~11.15 (14일간)	계	203	12	16	28	12	73	44	44	5	6	4	42
	위원회의결	118	3	9	7	28	6	7	44	5	5	4	42
	본회의결	85	-	3	9	-	6	66	-	-	1	-	-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8년 ~ 2022년.

2. 행정사무감사 처리

1) 처리 현황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8년 ~ 2022년.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다음 <표 4-2>와 같다. 2018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시정요구처리,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 건수는 크게 변동이 있다.

<표 4-2.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2018년	4,156	1,881	810	1,465
2019년	3,932	1,835	760	1,337
2020년	3,462	1,867	659	936
2021년	3,161	1,701	568	892
2022년	-	-	-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 ~ 2022년

2)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세부 처리 현황

(1) 2018년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4,156	1,881	810	1,465
운 영 위 원 회	95	44	38	13
행 정 자 치 위 원 회	358	195	84	79
기 획 경 제 위 원 회	718	244	201	273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393	128	152	11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356	129	104	12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675	353	33	289
도 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281	207	20	54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308	117	82	109
교 통 위 원 회	313	200	23	90
교 육 위 원 회	659	264	73	322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

(2) 2019년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932	1,835	760	1,337
운 영 위 원 회	85	26	41	18
행 정 자 치 위 원 회	390	256	42	9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677	294	138	245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347	133	107	107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336	141	120	75
보 건 복 지 위 원 회	654	244	57	353
도 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255	178	20	57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325	119	117	89
교 통 위 원 회	361	222	15	124
교 육 위 원 회	502	222	103	177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9.

(3) 2020년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462	1,867	659	936
운 영 위 원 회	99	54	35	10
행 정 자 치 위 원 회	439	266	64	109
기 획 경 제 위 원 회	675	327	147	201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269	169	58	4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299	137	87	75
보 건 복 지 위 원 회	441	189	52	200
도 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224	165	22	37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328	144	102	82
교 통 위 원 회	354	247	15	92
교 육 위 원 회	334	169	77	88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

(4)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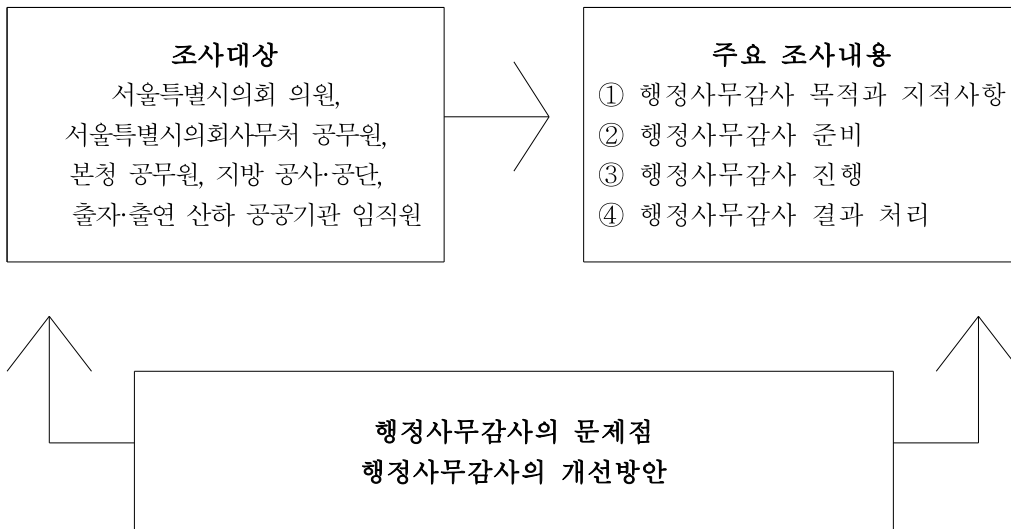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161	1,701	568	892
운 영 위 원 회	62	38	6	18
행 정 자 치 위 원 회	373	227	63	83
기 획 경 제 위 원 회	653	293	80	280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282	109	89	84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272	167	69	3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369	142	33	194
도 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211	162	24	25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252	129	47	76
교 통 위 원 회	341	269	20	52
교 육 위 원 회	346	165	137	44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

V.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 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서울특별시 본청 공무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 공공기관 임직원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이메일 조사
- 분석방법: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검증
- 분석도구: SPSS v27.0
- 분석 틀



본 연구의 설문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보완·발전시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포함한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본청 공무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 공공기관 임직원(이하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7일간 조사 기간을 두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수기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한계(대상자 모집 및 즉각적인 피드백 한계, 수기설문지 코딩 오류 등)를 극복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작성 및 수집은 설문조사 전문 플랫폼인 ‘Moatform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의 수집과 방법은 설문 대상자 협조 요청, 온라인 설문을 접속 가

능한 QR코드 설문지 현장 배포, 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설문 대상 관계자 전화접촉 및 이메일 수집·발송, 대상자 SMS 문자 메시지 발송, S.N.S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 모집하였다.

〈표 5-1. 설문조사 배포 및 결과〉

단위: 명

구분	모집단(정원)	조사목표 설계	응답 및 분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2	40	50 (26.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429	30	36 (19.0%)
서울특별시 본청 공무원	10,534	50	73 (38.6%)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⁶⁾	84 ⁷⁾	30	30 (15.9%)
합계	11,159	150	189 (100%)

출처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2022. 11. 10.), 클린아이(지방 출자·출연 기관 기관별 공시) 참고

설문조사문항 배포 결과, 전체 응답자는 198명이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0명(전체 응답자의 26.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36명(19.0%), 서울특별시 본청 공무원 73명(38.6%),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 공공기관 임직원 30명(15.9%)으로 구성되었다.

○ 설문조사 항목 및 측정 도구

설문조사 항목 및 측정도구는 다음 〈표 5-2〉와 같다.

- 6) 서울특별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는 산하 지방 공사·공단, 출자·출연 산하 공공기관(체육회 포함)을 말하며, 공사·공단(6개)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출자·출연(20개)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미디어재단TBS / 체육회(2개) -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 7) 모집단의 정원수가 방대하여 기관 조직도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담당업무이거나 결재선에 있는 임직원 1~3명 이내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표 5-2. 설문조사 항목 및 측정 도구〉

측정항목	문항 번호	문항
신분	2	① 지방의원 사무처 공무원 ② 사무처 공무원 ③ 본청 공무원 ④ 지방 출자·출연 산하 공공기관 ⑤ 일반시민
재직 연차	3	① 지방의원 : 당선 선수 ②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재직 연차
소속 지역	4	① 경기도 ② 서울특별시 ③ 인천광역시 ④ 그 밖에 지역
감사 목적	5	①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통제 ② 주민의 이익 반영 ③ 의원의 정치적 입지 강화 ④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⑤ 자치단체의 사업의 효율성 제고
감사 지적사항	6	① 법령/규정 위반 ② 예산 비효율 ③ 잘못된 정책 방향 ④ 절차 미준수 ⑤ 근무행태상 비위나 부정
감사 준비상 요인	7	7-1. 의원들은 사전에 감사 준비를 잘 한다. 7-2. 감사의 절차에 대한 피감기관의 의견이 반영된다. 7-3. 감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7-4. 의원은 감사 전문성이 있다.
감사 과정상 요인	8	8-1. 감사는 정해진 규정대로 잘 이뤄지고 있다. 8-2. 사무감사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 8-3. 집행기관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8-4. 증언 및 의견 진술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감사 처리상 요인	9	9-1. 사무감사가 행정업무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9-2.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진다. 9-3. 감사지적 사항의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한다. 9-4. 감사 지적 때문에 신규 사업이나 업무추진이 위축된다. 9-5.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도움이 된다.
감사 문제의 정도	10	10-1. 감사범위와 무관한 질문을 한다. 10-2. 중복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10-3. 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10-4. 집행기관은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10-5.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사 개선 필요 정도	11	11-1. 현행 감사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11-2. 현행 감사 기간을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 11-3. 감사 보좌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11-4. 수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나 위증, 비협조 등에 대해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11-5. 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주) Moaform 프로그램으로 설문조사(<https://www.moaform.com>)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직급 등은 분석 결과 도출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자료로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가능한 응답률과 조사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제외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신분은 서울특별시의원 26.5%(50명),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19.0%(36명), 본청 공무원 38.6%(73명)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직원 15.9%(30명)로 구성되었다. 조사설계과정에서 일반시민을 넣은 것은 설문과정에서 신분을 필터링하기 위해 조사문항을 넣었고, 설문조사 코딩 과정에서 일반 시민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특성상 본청 공무원의 의견이 과대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소속 지역은 100% 서울특별시 소속이다. 조사설계 상 다른 지역의 소속 대상자가 설문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설문에는 다양한 지역을 받았으나, 코딩 과정에서 서울시 소속만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셋째, 의원은 선수(選數)로 조사하였는데, 1선 72%(36명), 2선 14.0%(7명), 3선 8.0%(4명), 4선 이상 6.0%(3명)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공무원(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본청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직원은 재직 연차로 조사대상자의 특징에 따라 설문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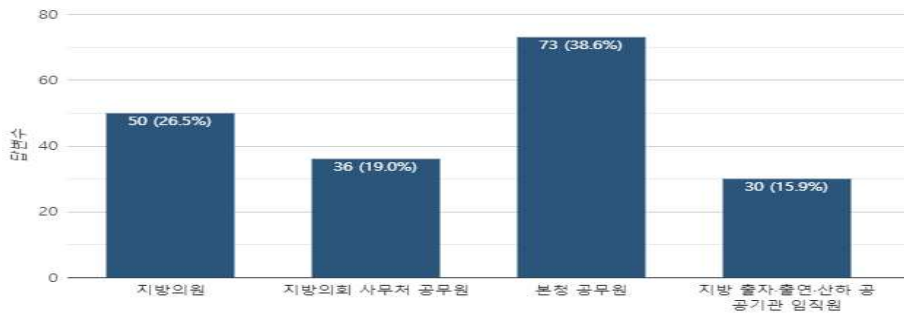
〈표 5-3. 응답자 신분〉

신분 (N=18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N=50)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N=36)	본청 공무원 (N=73)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N=30)
	26.5%	19.0%	38.6%	15.9%
	50	36	73	30
소속 지역	서울특별시 189(100%)			

설문의 응답은 서울특별시의원 50명,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36명, 본청 공무원 73명,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30명이 응답하였다.

경력 (기초의원 경력포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N=50)			
	1선	2선	3선	4선 이상
	72.0%	14.0%	8.0%	6.0%
	36	7	4	3
평균의원 경력	1.48선			

〈그림 5-1. 신분별 구성〉



설문에 응답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0명의 평균 선수는 평균 1.48선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설문에 응답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36명의 평균 재직 연차는 평균 8.58년, 본청 공무원 72명 평균 재직 연차는 평균 11.32년,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30명의 평균 재직 연차는 평균 7.53년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 본청 공무원 +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N=139)				
재직 연차	5년 이하	10년 이하	20년 이하	30년 이상
		65.5%	23.0%	7.2%
	91	32	30	2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평균 재직 연차		
		평균 8.58년		
본청 공무원		평균 재직 연차		
		평균 11.32년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평균 재직 연차		
		평균 7.53년		

3.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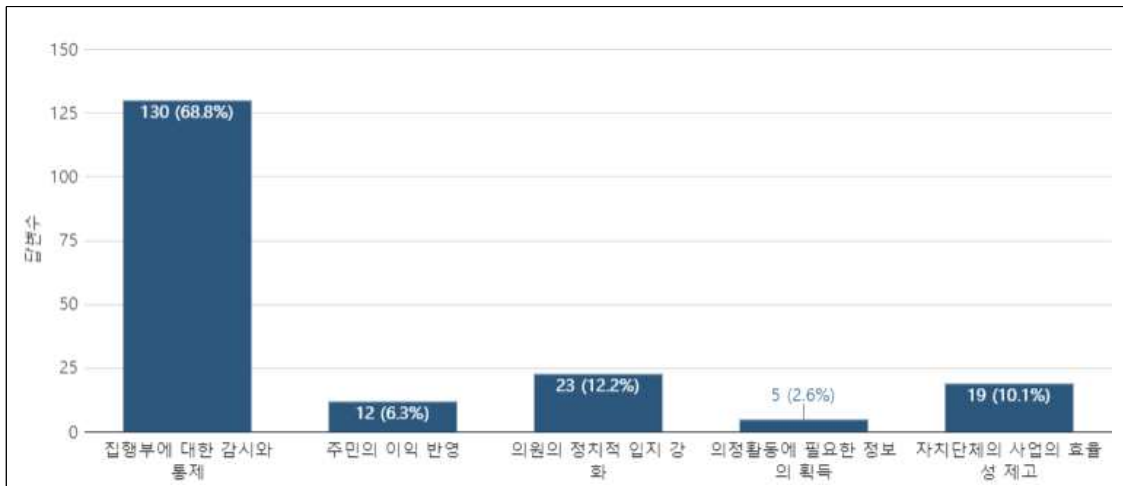
1)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한 인식

(1) 빈도분석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한 조사대상자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응답자(N=189)의 빈도분석 합산 결과는 〈그림 5-2〉와 같다. 조사대상자(N)는 68.8%(130명)가 ‘집행부의 감시 및 통제’라고 답했으며, 12.2%(23명)는 ‘의원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10.1%(19명)는 ‘자치단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6.3%(12명)은 ‘주민의 이

익반영'을, 2.6%(5명)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순으로 응답했다. 즉, 구체적으로 <표 5-4>와 같이 조사대상자 과반인 68.8%가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5-2.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



(2) 교차분석

<표 5-4. 신분에 따른 감사목적 결과>

구분	신분				N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본청 공무원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감사목적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84.0%	77.8%	63.0%	46.7%	68.8%
		42	28	46	14	130
	주민의 이익 반영	6.0%	8.3%	8.2%	0.0%	6.3%
		3	3	6	0	12
	의원의 정치적 입지 강화	0.0%	2.8%	14	8	12.2%
	0	1	19.2%	26.7%	23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0.0%	2.8%	2	2	2.6%	
	0	1	2.7%	6.7%	5	
자치단체의 사업의 효율성 제고	10.0%	8.3%	6.8%	20.0%	10.1%	
	5	3	5	6	19	
N=189		26.5%	19.0%	38.6%	15.9%	100.0%
		50	36	72	30	189

P<0.05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30.920a	12	P<0.02

세부적으로 신분에 따른 감사목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84.0%(42명), 사무처 공무원 77.8%(28명), 본청 공무원 63.0%(46명), 공공기관 임직원 46.7%(14명)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카이제곱 값이 30.92a로 P<0.0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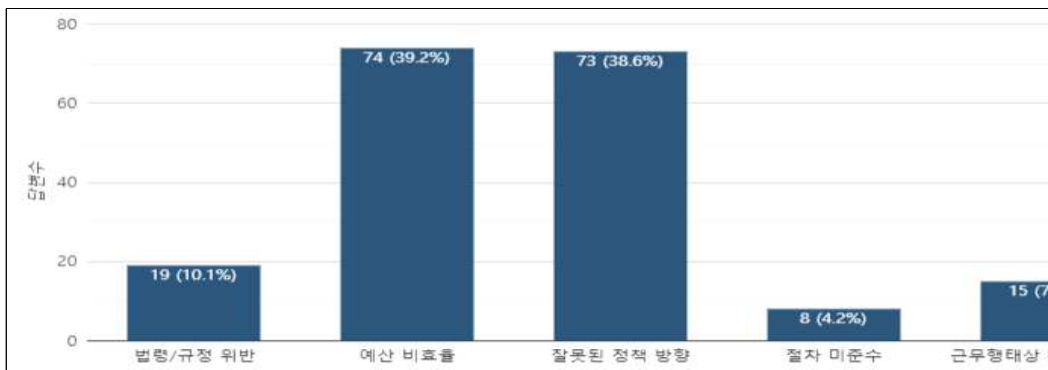
조사 결과, 나머지 의원의 정치적 입지 강화, 사업효율성 제고, 주민의 이익반영,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 문항은 교차분석의 결과를 보여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행부의 감사 통제의 의견에 차이는 분석 결과에 따라 본청 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사무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2)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

(1) 빈도분석

행정사무감사 운영과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에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하였다. 〈그림〉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39.2%(74명)는 ‘예산 비효율’을, 근소한 차이로 38.6%(37명)는 ‘잘못된 정책 방향’, 10.1%(19명)는 ‘법령/규정 위반’, 7.9(15명)은 ‘근무행태상 비위나 부정’, 4.2%(8명)은 절차 미준수를 지적하고 있다.

〈그림 5-3.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



(2) 교차분석

신분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산비효율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8.0%(19명), 사무처 공무원 27.8%(10명), 본청 공무원 47.9%(35명), 공공기관 임직원 46.7%(14명)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8.0%(19명), 의회사무처 공무원 50.0%(18명), 본청 공무원 35.6%(26명), 공공기관 임직원 33.3%(10명)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카이제곱 값이 19.129a로 $P < 0.8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예산 비효율의 의견에 차이는 분석 결과에 따라 본청 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 공무원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잘못된 정책 방향은 의회사무처 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본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표 5-5.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

구분		신분				N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공무원	본청 공무원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가 장 많 은 지 적 사 항	법령/규정 위반	16.0% 8	8.3% 3	5.5% 4	13.3% 4	10.1% 19
	예산 비효율	38.0% 19	27.8% 10	47.9% 35	33.3% 10	39.2% 74
	잘못된 정책 방향	38.0% 19	50.0% 18	35.6% 26	33.3% 10	38.6% 73
	절차 미준수	0.0% 0	2.8% 1	8.2% 6	3.3% 1	8 4.2%
	근무행태상 비위나 부정	8.0% 4	11.1% 4	2.7% 2	16.7% 5	7.9% 15
N=189		26.5% 50	19.0% 36	38.6% 73	15.9% 30	100% 189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9.129a	12	$P < 0.85$

3)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 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03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4.0,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02, 본청 공무원은 2.46, 공공기관 임직원은 2.83로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에 대한 인식은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19.129,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5-4.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 평균값〉



〈표 5-6〉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빈도	0	0	12	26	12	50	4.0
	신분 중 %	0.0%	0.0%	24.0%	52.0%	24.0%	100.0%	
	감사준비 중 %	0.0%	0.0%	15.8%	54.2%	92.3%	26.5%	
전체 중 %	0.0%	0.0%	6.3%	13.8%	6.3%	26.5%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2	8	14	11	1	36	3.02
	신분 중 %	5.6%	22.2%	38.9%	30.6%	2.8%	100.0%	
	감사준비 중 %	13.3%	21.6%	18.4%	22.9%	7.7%	19.0%	
전체 중 %	1.1%	4.2%	7.4%	5.8%	0.5%	19.0%		
본청 공무원	빈도	10	24	34	5	0	73	2.46
	신분 중 %	13.7%	32.9%	46.6%	6.8%	0.0%	100.0%	
	감사준비 중 %	66.7%	64.9%	44.7%	10.4%	0.0%	38.6%	
전체 중 %	5.3%	12.7%	18.0%	2.6%	0.0%	38.6%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3	5	16	6	0	30	2.83
	신분 중 %	10.0%	16.7%	53.3%	20.0%	0.0%	100.0%	
	감사준비 중 %	20.0%	13.5%	21.1%	12.5%	0.0%	15.9%	
전체 중 %	1.6%	2.6%	8.5%	3.2%	0.0%	15.9%		
계 (N=189)	빈도	15	37	76	48	13	189	3.03
	신분 중 %	7.9%	19.6%	40.2%	25.4%	6.9%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7.9%	19.6%	40.2%	25.4%	6.9%	100.0%		

$P < 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83.204a	12	P<0.01

4) 감사의 절차에 대한 피감기관 의견반영

감사의 절차에 대한 피감기관 의견 반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2.7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38,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2.06, 본청 공무원은 2.32, 공공기관 임직원은 2.40으로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에 대한 인식은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45.862,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표 5-7. 감사 절차에 대한 피감기관 의견 반영〉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서울특별 시의회 의원	빈도	0	5	21	24	0	50
	신분 중 %	0.0%	10.0%	42.0%	48.0%	0.0%	100.0%
	감사준비 중 %	0.0%	9.1%	29.2%	57.1%	0.0%	26.5%
서울특별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3	9	14	10	0	36
	신분 중 %	8.3%	25.0%	38.9%	27.8%	0%	100.0%
	감사준비 중 %	15.0%	16.4%	19.4%	23.8%	0%	19.0%
본청 공무원	빈도	12	29	28	4	0	73
	신분 중 %	16.4%	39.7%	38.4%	5.5%	0%	100.0%
	감사준비 중 %	60.0%	52.7%	38.9%	9.5%	0%	38.6%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5	12	9	4	0	30
	신분 중 %	16.7%	40.0%	30.0%	13.3%	0%	100.0%
	감사준비 중 %	25.0%	21.8%	12.5%	9.5%	0%	15.9%
계 (N=189)	빈도	20	55	72	42	0	189
	신분 중 %	10.6%	29.1%	38.1%	22.2%	0%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0%	100.0%
	전체 중 %	10.6%	29.1%	38.1%	22.2%	0%	100.0%

P<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45.862a	9	P<0.01

〈그림 5-5. 감사의 절차에 따른 피감기관 의견반영 평균값〉



5) 감사중 습득한 정보 비밀유지

감사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정보의 비밀 유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29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4.22,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38, 본청 공무원은 2.78, 공공기관 임직원은 2.86으로 감사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인식은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표 5-8. 감사 중 습득한 정보 비밀유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빈도	0	3	3	24	20	50	4.22
	신분 중 %	0.0%	6.0%	6.0%	48.0%	40.0%	100.0%	
	감사준비 중 %	0.0%	10.0%	5.7%	40.7%	66.7%	26.5%	
	전체 중 %	0.0%	1.6%	1.6%	12.7%	10.6%	26.5%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3	3	10	17	3	36	3.38
	신분 중 %	8.3%	8.3%	27.8%	47.2%	8.3%	100.0%	
	감사준비 중 %	17.6%	10.0%	18.9%	28.8%	10.0%	19.0%	
	전체 중 %	1.6%	1.6%	5.3%	9.0%	1.6%	19.0%	
본청 공무원	빈도	10	18	27	14	4	73	2.78
	신분 중 %	13.7%	24.7%	37.0%	19.2%	5.5%	100.0%	
	감사준비 중 %	58.8%	60.0%	50.9%	23.7%	13.3%	38.6%	
	전체 중 %	5.3%	9.5%	14.3%	7.4%	2.1%	38.6%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4	6	13	4	3	30	2.86
	신분 중 %	13.3%	20.0%	43.3%	13.3%	10.0%	100.0%	
	감사준비 중 %	23.5%	20.0%	24.5%	6.8%	10.0%	15.9%	
	전체 중 %	2.1%	3.2%	6.9%	2.1%	1.6%	15.9%	
계 (N=189)	빈도	17	30	53	59	30	189	3.29
	신분 중 %	9.0%	15.9%	28.0%	31.2%	15.9%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9.0%	15.9%	28.0%	31.2%	15.9%	100.0%	

P<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67.591a	12	P<0.01

〈그림 5-5. 감사중 습득한 정보 비밀유지 평균값〉



6) 의원의 감사 전문성

의원의 감사 전문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2.67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52,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2.88, 본청 공무원은 2.08, 공공기관 임직원은 2.43으로 의원의 감사 전문성의 인식은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68.96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5-6. 의원의 감사 전문성 평균값〉



〈표 5-9. 의원의 감사전문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서울특별 시의회 의원	빈도	0	4	19	24	3	50	3.52
	신분 중 %	0.0%	8.0%	38.0%	48.0%	6.0%	100.0%	
	감사준비 중 %	0.0%	8.7%	27.1%	63.2%	75.0%	26.5%	
	전체 중 %	0.0%	2.1%	10.1%	12.7%	1.6%	26.5%	
서울특별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3	6	20	6	1	36	2.88
	신분 중 %	8.3%	16.7%	55.6%	16.7%	2.8%	100.0%	
	감사준비 중 %	9.7%	13.0%	28.6%	15.8%	25.0%	19.0%	
	전체 중 %	1.6%	3.2%	10.6%	3.2%	0.5%	19.0%	
본청 공무원	빈도	22	26	22	3	0	73	2.08
	신분 중 %	30.1%	35.6%	30.1%	4.1%	0.0%	100.0%	
	감사준비 중 %	71.0%	56.5%	31.4%	7.9%	0.0%	38.6%	
	전체 중 %	11.6%	13.8%	11.6%	1.6%	0.0%	38.6%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6	10	9	5	0	30	2.43
	신분 중 %	20.0%	33.3%	30.0%	16.7%	0.0%	100.0%	
	감사준비 중 %	19.4%	21.7%	12.9%	13.2%	0.0%	15.9%	
	전체 중 %	3.2%	5.3%	4.8%	2.6%	0.0%	15.9%	
계 (N=189)	빈도	31	46	70	38	4	189	2.67
	신분 중 %	16.4%	24.3%	37.0%	20.1%	2.1%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16.4%	24.3%	37.0%	20.1%	2.1%	100.0%	

P<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68.961a	12	P<0.01

7) 감사규정 준수

감사가 정해진 규정대로 준수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3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71,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55, 본청 공무원은 2.86, 공공기관 임직원은 3.31로 감사가 규정대로 준수의 인식은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48.63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5-7. 감사규정 준수 평균값〉



〈표 5-10. 감사규정 준수〉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서울특별 시의회 의원	빈도	0	0	15	32	3	50	3.76
	신분 중 %	0.0%	0.0%	30.0%	64.0%	6.0%	100.0%	
	감사준비 중 %	0.0%	0.0%	18.8%	41.0%	42.9%	26.5%	
	전체 중 %	0.0%	0.0%	7.9%	16.9%	1.6%	26.5%	
서울특별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1	3	9	21	2	36	3.55
	신분 중 %	2.8%	8.3%	25.0%	58.3%	5.6%	100.0%	
	감사준비 중 %	12.5%	18.8%	11.3%	26.9%	28.6%	19.0%	
	전체 중 %	0.5%	1.6%	4.8%	11.1%	1.1%	19.0%	
본청 공무원	빈도	6	13	39	15	0	73	2.86
	신분 중 %	8.2%	17.8%	53.4%	20.5%	0.0%	100.0%	
	감사준비 중 %	75.0%	81.3%	48.8%	19.2%	0.0%	38.6%	
	전체 중 %	3.2%	6.9%	20.6%	7.9%	0.0%	38.6%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1	0	17	10	2	30	3.40
	신분 중 %	3.3%	0.0%	56.7%	33.3%	6.7%	100.0%	
	감사준비 중 %	12.5%	0.0%	21.3%	12.8%	28.6%	15.9%	
	전체 중 %	0.5%	0.0%	9.0%	5.3%	1.1%	15.9%	
계 (N=189)	빈도	8	16	80	78	7	189	3.31
	신분 중 %	4.2%	8.5%	42.3%	41.3%	3.7%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4.2%	8.5%	42.3%	41.3%	3.7%	100.0%	

P<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48.673a	12	P<0.01

8) 감사 시간의 충분

감사 시간의 충분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3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70,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27, 본청 공무원은 3.13, 공공기관 임직원은 3.06으로 감사 시간의 충분성의 인식은 본청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표 5-11. 감사 시간의 충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빈도	5	16	18	11	0	50
	신분 중 %	10.0%	32.0%	36.0%	22.0%	0.0%	100.0%
	감사준비 중 %	41.7%	34.8%	27.3%	20.8%	0.0%	26.5%
	전체 중 %	2.6%	8.5%	9.5%	5.8%	0.0%	26.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빈도	0	9	11	13	3	36
	신분 중 %	0.0%	25.0%	30.6%	36.1%	8.3%	100.0%
	감사준비 중 %	0.0%	19.6%	16.7%	24.5%	25.0%	19.0%
	전체 중 %	0.0%	4.8%	5.8%	6.9%	1.6%	19.0%
본청 공무원	빈도	4	16	25	22	6	73
	신분 중 %	5.5%	21.9%	34.2%	30.1%	8.2%	100.0%
	감사준비 중 %	33.3%	34.8%	37.9%	41.5%	50.0%	38.6%
	전체 중 %	2.1%	8.5%	13.2%	11.6%	3.2%	38.6%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3	5	12	7	3	30
	신분 중 %	10.0%	16.7%	40.0%	23.3%	10.0%	100.0%
	감사준비 중 %	25.0%	10.9%	18.2%	13.2%	25.0%	15.9%
	전체 중 %	1.6%	2.6%	6.3%	3.7%	1.6%	15.9%
계 (N=189)	빈도	12	46	66	53	12	189
	신분 중 %	6.3%	24.3%	34.9%	28.0%	6.3%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6.3%	24.3%	34.9%	28.0%	6.3%	100.0%

P<3.78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2.878a	12	P<3.78

〈그림 5-8. 감사 시간의 충분 평균값〉



9) 집행기관 제출자료의 관련성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3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80,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2.91, 본청 공무원은 3.50, 공공기관 임직원은 3.53으로 감사 시간의 충분성의 인식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표 5-12. 집행기관의 제출자료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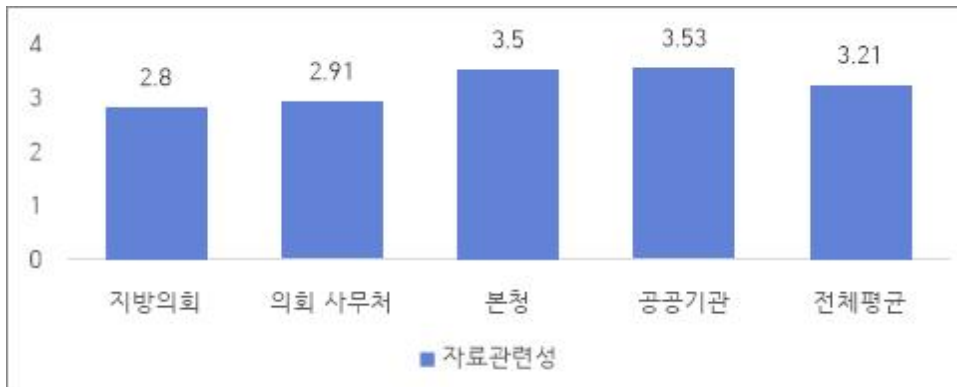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6	14	16	12	2	50	2.80
	신분 중 %	12.0%	28.0%	32.0%	24.0%	4.0%	100.0%	
	감사준비 중 %	46.2%	48.3%	25.0%	16.9%	16.7%	26.5%	
	전체 중 %	3.2%	7.4%	8.5%	6.3%	1.1%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2	9	15	10	0	36	2.91
	신분 중 %	5.6%	25.0%	41.7%	27.8%	0.0%	100.0%	
	감사준비 중 %	15.4%	31.0%	23.4%	14.1%	0.0%	19.0%	
	전체 중 %	1.1%	4.8%	7.9%	5.3%	0.0%	19.0%	
본청 공무원	빈도	3	4	26	33	7	73	3.50
	신분 중 %	4.1%	5.5%	35.6%	45.2%	9.6%	100.0%	
	감사준비 중 %	23.1%	13.8%	40.6%	46.5%	58.3%	38.6%	
	전체 중 %	1.6%	2.1%	13.8%	17.5%	3.7%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2	2	7	16	3	30	3.53
	신분 중 %	6.7%	6.7%	23.3%	53.3%	10.0%	100.0%	
	감사준비 중 %	15.4%	6.9%	10.9%	22.5%	25.0%	15.9%	
	전체 중 %	1.1%	1.1%	3.7%	8.5%	1.6%	15.9%	
계 (N=189)	빈도	13	29	64	71	12	189	3.21
	신분 중 %	6.9%	15.3%	33.9%	37.6%	6.3%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6.9%	15.3%	33.9%	37.6%	6.3%	100.0%	

P<.004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29.114a	12	P<.004

〈그림 5-9. 집행기관 제출자료의 평균값〉



10) 증언 및 의견진술 원할

증언 및 의견진술의 원할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7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04,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13, 본청 공무원은 3.16, 공공기관 임직원은 3.46으로 증언 및 의견진술의 원할에 관한 인식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10.571, P<5.66으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5-10. 증언 및 의견진술 원할 평균값〉



〈표 5-13. 증언 및 의견진술 원할〉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3	9	22	15	1	50	3.04
	신분 중 %	6.0%	18.0%	44.0%	30.0%	2.0%	100.0%	
	감사준비 중 %	27.3%	39.1%	26.2%	23.4%	14.3%	26.5%	
	전체 중 %	1.6%	4.8%	11.6%	7.9%	0.5%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2	4	17	13	0	36	3.13
	신분 중 %	5.6%	11.1%	47.2%	36.1%	0.0%	100.0%	
	감사준비 중 %	18.2%	17.4%	20.2%	20.3%	0.0%	19.0%	
	전체 중 %	1.1%	2.1%	9.0%	6.9%	0.0%	19.0%	
본청 공무원	빈도	4	10	33	22	4	73	3.16
	신분 중 %	5.5%	13.7%	45.2%	30.1%	5.5%	100.0%	
	감사준비 중 %	36.4%	43.5%	39.3%	34.4%	57.1%	38.6%	
	전체 중 %	2.1%	5.3%	17.5%	11.6%	2.1%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2	0	12	14	2	30	3.46
	신분 중 %	6.7%	0.0%	40.0%	46.7%	6.7%	100.0%	
	감사준비 중 %	18.2%	0.0%	14.3%	21.9%	28.6%	15.9%	
	전체 중 %	1.1%	0.0%	6.3%	7.4%	1.1%	15.9%	
계 (N=189)	빈도	11	23	84	64	7	189	3.17
	신분 중 %	5.8%	12.2%	44.4%	33.9%	3.7%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5.8%	12.2%	44.4%	33.9%	3.7%	100.0%	

P<5.66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0.571a	12	P<5.66

11) 행정업무의 개선 도움 정도

행정업무 개선의 도움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00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80, 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3.41, 본청 공무원은 2.39, 공공기관 임직원은 2.63으로 행정 업무의 개선에 도움정도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77.10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5-11. 행정업무 개선의 도움 정도 평균값〉



〈표 5-14. 행정업무 개선의 도움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0	0	12	36	2	50	3.80
	신분 중 %	0.0%	0.0%	24.0%	72.0%	4.0%	100.0%	
	감사준비 중 %	0.0%	0.0%	20.7%	50.7%	66.7%	26.5%	
	전체 중 %	0.0%	0.0%	6.3%	19.0%	1.1%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1	3	13	18	1	36	3.41
	신분 중 %	2.8%	8.3%	36.1%	50.0%	2.8%	100.0%	
	감사준비 중 %	5.0%	8.1%	22.4%	25.4%	33.3%	19.0%	
	전체 중 %	0.5%	1.6%	6.9%	9.5%	0.5%	19.0%	
본청 공무원	빈도	13	29	20	11	0	73	2.39
	신분 중 %	17.8%	39.7%	27.4%	15.1%	0.0%	100.0%	
	감사준비 중 %	65.0%	78.4%	34.5%	15.5%	0.0%	38.6%	
	전체 중 %	6.9%	15.3%	10.6%	5.8%	0.0%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6	5	13	6	0	30	2.63
	신분 중 %	20.0%	16.7%	43.3%	20.0%	0.0%	100.0%	
	감사준비 중 %	30.0%	13.5%	22.4%	8.5%	0.0%	15.9%	
	전체 중 %	3.2%	2.6%	6.9%	3.2%	0.0%	15.9%	
계 (N=189)	빈도	20	37	58	71	3	189	3.00
	신분 중 %	10.6%	19.6%	30.7%	37.6%	1.6%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10.6%	19.6%	30.7%	37.6%	1.6%	100.0%	

P<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77.109a	12	P<0.01

12)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반영 정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반영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40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42,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36, 본청 공무원은 3.35, 공공기관 임직원은 3.53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반영 정도에 관한 인식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표 5-15.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반영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0	3	24	22	1	50	3.42
	신분 중 %	0.0%	6.0%	48.0%	44.0%	2.0%	100.0%	
	감사준비 중 %	0.0%	23.1%	33.8%	23.7%	20.0%	26.5%	
	전체 중 %	0.0%	1.6%	12.7%	11.6%	0.5%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2	1	15	18	0	36	3.36
	신분 중 %	5.6%	2.8%	41.7%	50.0%	0.0%	100.0%	
	감사준비 중 %	28.6%	7.7%	21.1%	19.4%	0.0%	19.0%	
	전체 중 %	1.1%	0.5%	7.9%	9.5%	0.0%	19.0%	
본청 공무원	빈도	4	7	22	39	1	73	3.35
	신분 중 %	5.5%	9.6%	30.1%	53.4%	1.4%	100.0%	
	감사준비 중 %	57.1%	53.8%	31.0%	41.9%	20.0%	38.6%	
	전체 중 %	2.1%	3.7%	11.6%	20.6%	0.5%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1	2	10	14	3	30	3.53
	신분 중 %	3.3%	6.7%	33.3%	46.7%	10.0%	100.0%	
	감사준비 중 %	14.3%	15.4%	14.1%	15.1%	60.0%	15.9%	
	전체 중 %	0.5%	1.1%	5.3%	7.4%	1.6%	15.9%	
계 (N=189)	빈도	7	13	71	93	5	189	3.40
	신분 중 %	3.7%	6.9%	37.6%	49.2%	2.6%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3.7%	6.9%	37.6%	49.2%	2.6%	100.0%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5.559a	12	P<2.12

〈그림 5-12.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반영 정도 평균값〉



13)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확인 정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77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4.08,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4.02, 본청 공무원은 3.41, 공공기관 임직원은 3.38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정도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표 5-16.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0	0	5	36	9	50	4.08
	신분 중 %	0.0%	0.0%	10.0%	72.0%	18.0%	100.0%	
	감사준비 중 %	0.0%	0.0%	11.6%	36.0%	28.1%	26.5%	
전체 중 %		0.0%	0.0%	2.6%	19.0%	4.8%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0	1	4	24	7	36	4.02
	신분 중 %	0.0%	2.8%	11.1%	66.7%	19.4%	100.0%	
	감사준비 중 %	0.0%	10.0%	9.3%	24.0%	21.9%	19.0%	
전체 중 %		0.0%	0.5%	2.1%	12.7%	3.7%	19.0%	
본청 공무원	빈도	4	8	24	28	9	73	3.41
	신분 중 %	5.5%	11.0%	32.9%	38.4%	12.3%	100.0%	
	감사준비 중 %	100.0%	80.0%	55.8%	28.0%	28.1%	38.6%	
전체 중 %		2.1%	4.2%	12.7%	14.8%	4.8%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0	1	10	12	7	30	3.83
	신분 중 %	0.0%	3.3%	33.3%	40.0%	23.3%	100.0%	
	감사준비 중 %	0.0%	10.0%	23.3%	12.0%	21.9%	15.9%	
전체 중 %		0.0%	0.5%	5.3%	6.3%	3.7%	15.9%	
계 (N=189)	빈도	4	10	43	100	32	189	3.77
	신분 중 %	2.1%	5.3%	22.8%	52.9%	16.9%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2.1%	5.3%	22.8%	52.9%	16.9%	100.0%	

P<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34.971a	12	P<0.01

〈그림 5-13.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정도 평균값〉



14) 감사 지적에 따른 업무추진 위축 정도

감사 지적에 따른 업무추진 위축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08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48,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2.72, 본청 공무원은 3.53, 공공기관 임직원은 3.46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위축 정도에 관한 인식은 본청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15.559,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5-14. 감사 지적에 따른 업무추진 위축 정도 평균값〉



〈표 5-17. 감사 지적에 따른 업무추진 위축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2	30	10	8	0	50	2.48
	신분 중 %	4.0%	60.0%	20.0%	16.0%	0.0%	100.0%	
	감사준비 중 %	28.6%	57.7%	15.6%	16.3%	0.0%	26.5%	
	전체 중 %	1.1%	15.9%	5.3%	4.2%	0.0%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1	14	16	4	1	36	2.72
	신분 중 %	2.8%	38.9%	44.4%	11.1%	2.8%	100.0%	
	감사준비 중 %	14.3%	26.9%	25.0%	8.2%	5.9%	19.0%	
	전체 중 %	0.5%	7.4%	8.5%	2.1%	0.5%	19.0%	
본청 공무원	빈도	3	4	29	25	12	73	3.53
	신분 중 %	4.1%	5.5%	39.7%	34.2%	16.4%	100.0%	
	감사준비 중 %	42.9%	7.7%	45.3%	51.0%	70.6%	38.6%	
	전체 중 %	1.6%	2.1%	15.3%	13.2%	6.3%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1	4	9	12	4	30	3.46
	신분 중 %	3.3%	13.3%	30.0%	40.0%	13.3%	100.0%	
	감사준비 중 %	14.3%	7.7%	14.1%	24.5%	23.5%	15.9%	
	전체 중 %	0.5%	2.1%	4.8%	6.3%	2.1%	15.9%	
계 (N=189)	빈도	7	52	64	49	17	189	3.08
	신분 중 %	3.7%	27.5%	33.9%	25.9%	9.0%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3.7%	27.5%	33.9%	25.9%	9.0%	100.0%	

P<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61.345a	12	P<0.01

15) 지방의회 권한 강화 도움 정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 도움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73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4.06,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88, 본청 공무원은 3.42, 공공기관 임직원은 3.73으로 감사가 서울특별시의회 권한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정도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28.852, P<0.0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표 5-18. 지방의회 권한 강화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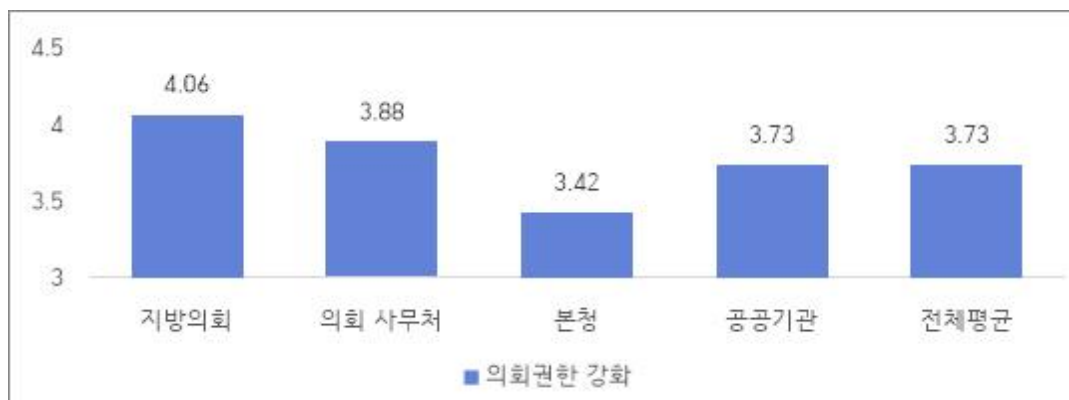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0	1	5	34	10	50	4.06
	신분 중 %	0.0%	2.0%	10.0%	68.0%	20.0%	100.0%	
	감사준비 중 %	0.0%	7.1%	13.2%	36.2%	27.8%	26.5%	
	전체 중 %	0.0%	0.5%	2.6%	18.0%	5.3%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1	1	8	17	9	36	3.88
	신분 중 %	2.8%	2.8%	22.2%	47.2%	25.0%	100.0%	
	감사준비 중 %	14.3%	7.1%	21.1%	18.1%	25.0%	19.0%	
	전체 중 %	0.5%	0.5%	4.2%	9.0%	4.8%	19.0%	
본청 공무원	빈도	5	10	21	23	14	73	3.42
	신분 중 %	6.8%	13.7%	28.8%	31.5%	19.2%	100.0%	
	감사준비 중 %	71.4%	71.4%	55.3%	24.5%	38.9%	38.6%	
	전체 중 %	2.6%	5.3%	11.1%	12.2%	7.4%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1	2	4	20	3	30	3.73
	신분 중 %	3.3%	6.7%	13.3%	66.7%	10.0%	100.0%	
	감사준비 중 %	14.3%	14.3%	10.5%	21.3%	8.3%	15.9%	
	전체 중 %	0.5%	1.1%	2.1%	10.6%	1.6%	15.9%	
계 (N=189)	빈도	7	14	38	94	36	189	3.73
	신분 중 %	3.7%	7.4%	20.1%	49.7%	19.0%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3.7%	7.4%	20.1%	49.7%	19.0%	100.0%	

P<0.04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28.852a	12	P<0.04

〈그림 5-15. 지방의회 권한 강화 도움 정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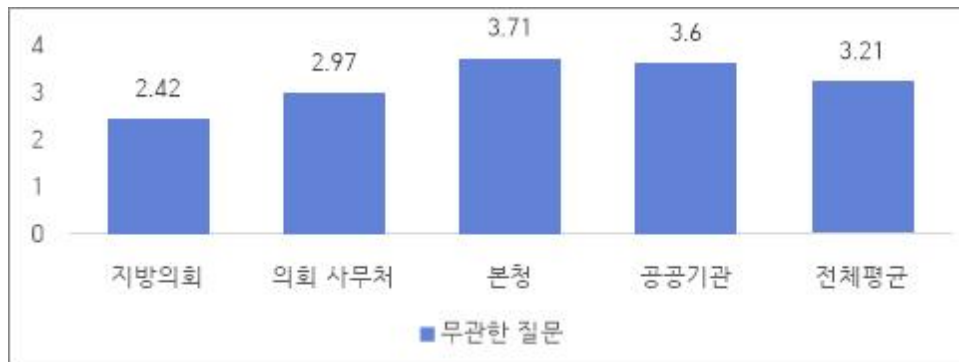


16) 감사와 무관한 질문 정도

감사와 무관한 질문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려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2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42,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2.97, 본청 공무원은 3.71, 공공기관 임직원은 3.60으로 감사 범위와 무관한 질문을 하는 정도에 관한 인식은 본청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54.986,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5-16. 감사와 무관한 질문 정도 평균값〉



〈표 5-19. 감사와 무관한 질문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5	26	12	7	0	50	2.42
	신분 중 %	10.0%	52.0%	24.0%	14.0%	0.0%	100.0%	
	감사준비 중 %	83.3%	52.0%	23.1%	11.7%	0.0%	26.5%	
전체 중 %		2.6%	13.8%	6.3%	3.7%	0.0%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1	12	12	9	2	36	2.97
	신분 중 %	2.8%	33.3%	33.3%	25.0%	5.6%	100.0%	
	감사준비 중 %	16.7%	24.0%	23.1%	15.0%	9.5%	19.0%	
전체 중 %		0.5%	6.3%	6.3%	4.8%	1.1%	19.0%	
본청 공무원	빈도	0	8	20	30	15	73	3.71
	신분 중 %	0.0%	11.0%	27.4%	41.1%	20.5%	100.0%	
	감사준비 중 %	0.0%	16.0%	38.5%	50.0%	71.4%	38.6%	
전체 중 %		0.0%	4.2%	10.6%	15.9%	7.9%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0	4	8	14	4	30	3.60
	신분 중 %	0.0%	13.3%	26.7%	46.7%	13.3%	100.0%	
	감사준비 중 %	0.0%	8.0%	15.4%	23.3%	19.0%	15.9%	
전체 중 %		0.0%	2.1%	4.2%	7.4%	2.1%	15.9%	
계 (N=189)	빈도	6	50	52	60	21	189	3.21
	신분 중 %	3.2%	26.5%	27.5%	31.7%	11.1%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3.2%	26.5%	27.5%	31.7%	11.1%	100.0%	

$P < 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54.986a	12	P<0.01

17) 중복감사 정도

중복감사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37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70,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22, 본청 공무원은 3.79, 공공기관 임직원은 3.63으로 중복감사 정도에 관한 인식은 본청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38.520,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표 5-20. 중복감사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2	20	19	9	0	50	2.70
	신분 중 %	4.0%	40.0%	38.0%	18.0%	0.0%	100.0%	
	감사준비 중 %	66.7%	51.3%	29.7%	17.6%	0.0%	26.5%	
	전체 중 %	1.1%	10.6%	10.1%	4.8%	0.0%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1	10	10	10	5	36	3.22
	신분 중 %	2.8%	27.8%	27.8%	27.8%	13.9%	100.0%	
	감사준비 중 %	33.3%	25.6%	15.6%	19.6%	15.6%	19.0%	
	전체 중 %	0.5%	5.3%	5.3%	5.3%	2.6%	19.0%	
본청 공무원	빈도	0	6	23	24	20	73	3.79
	신분 중 %	0.0%	8.2%	31.5%	32.9%	27.4%	100.0%	
	감사준비 중 %	0.0%	15.4%	35.9%	47.1%	62.5%	38.6%	
	전체 중 %	0.0%	3.2%	12.2%	12.7%	10.6%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0	3	12	8	7	30	3.63
	신분 중 %	0.0%	10.0%	40.0%	26.7%	23.3%	100.0%	
	감사준비 중 %	0.0%	7.7%	18.8%	15.7%	21.9%	15.9%	
	전체 중 %	0.0%	1.6%	6.3%	4.2%	3.7%	15.9%	
계 (N=189)	빈도	3	39	64	51	32	189	3.37
	신분 중 %	1.6%	20.6%	33.9%	27.0%	16.9%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1.6%	20.6%	33.9%	27.0%	16.9%	100.0%	

P<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38.520a	12	P<0.01

〈그림 5-17. 중복감사 정도 평균값〉



18) 관계없는 자료요구 정도

관계없는 자료요구 정도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2.42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42,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02, 본청 공무원은 3.90, 공공기관 임직원은 3.63으로 감사와 관계없는 자료요구에 관한 인식은 본청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74.308,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표 5-21. 관계없는 자료요구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의원	빈도	4	28	11	7	0	50	2.42
	신분 중 %	8.0%	56.0%	22.0%	14.0%	0.0%	100.0%	
	감사준비 중 %	80.0%	63.6%	19.6%	12.3%	0.0%	26.5%	
전체 중 %		2.1%	14.8%	5.8%	3.7%	0.0%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1	10	14	9	2	36	3.02
	신분 중 %	2.8%	27.8%	38.9%	25.0%	5.6%	100.0%	
	감사준비 중 %	20.0%	22.7%	25.0%	15.8%	7.4%	19.0%	
전체 중 %		0.5%	5.3%	7.4%	4.8%	1.1%	19.0%	
본청 공무원	빈도	0	4	19	30	20	73	3.90
	신분 중 %	0.0%	5.5%	26.0%	41.1%	27.4%	100.0%	
	감사준비 중 %	0.0%	9.1%	33.9%	52.6%	74.1%	38.6%	
전체 중 %		0.0%	2.1%	10.1%	15.9%	10.6%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0	2	12	11	5	30	3.63
	신분 중 %	0.0%	6.7%	40.0%	36.7%	16.7%	100.0%	
	감사준비 중 %	0.0%	4.5%	21.4%	19.3%	18.5%	15.9%	
전체 중 %		0.0%	1.1%	6.3%	5.8%	2.6%	15.9%	
계 (N=189)	빈도	5	44	56	57	27	189	3.30
	신분 중 %	2.6%	23.3%	29.6%	30.2%	14.3%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2.6%	23.3%	29.6%	30.2%	14.3%	100.0%	

$P < 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74.308a	12	P<0.01

〈그림 5-18. 관계없는 자료요구 정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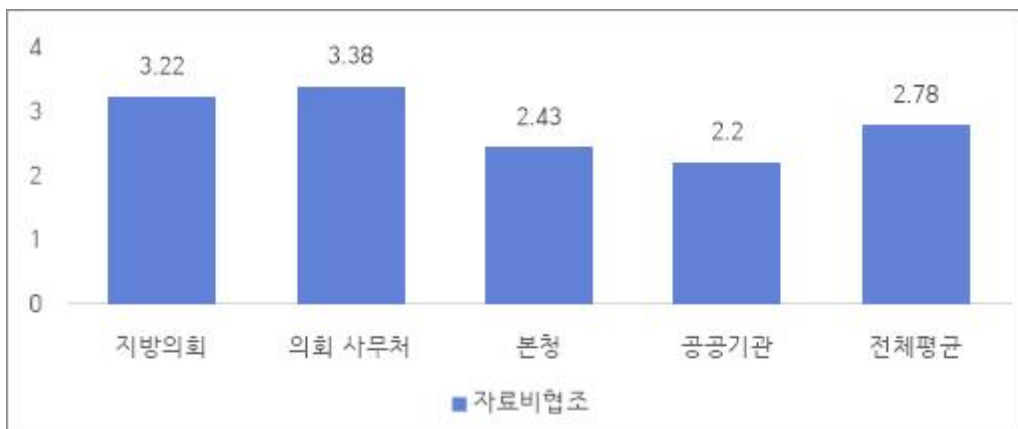


19) 자료제공 비협조 정도

자료 제공 비협조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2.78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22, 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3.38, 본청 공무원은 2.42, 공공기관 임직원은 2.20으로 자료 비협조 제공 정도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이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42.258,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5-19. 자료제공 비협조 정도 평균값〉



〈표 5-22. 자료제공 비협조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1	10	20	15	4	50	3.22
	신분 중 %	2.0%	20.0%	40.0%	30.0%	8.0%	100.0%	
	감사준비 중 %	8.3%	14.5%	31.3%	42.9%	44.4%	26.5%	
전체 중 %		0.5%	5.3%	10.6%	7.9%	2.1%	26.5%	3.38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0	5	15	13	3	36	
	신분 중 %	0.0%	13.9%	41.7%	36.1%	8.3%	100.0%	
	감사준비 중 %	0.0%	7.2%	23.4%	37.1%	33.3%	19.0%	
전체 중 %		0.0%	2.6%	7.9%	6.9%	1.6%	19.0%	2.43
본청 공무원	빈도	7	37	21	6	2	73	
	신분 중 %	9.6%	50.7%	28.8%	8.2%	2.7%	100.0%	
	감사준비 중 %	58.3%	53.6%	32.8%	17.1%	22.2%	38.6%	
전체 중 %		3.7%	19.6%	11.1%	3.2%	1.1%	38.6%	2.20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4	17	8	1	0	30	
	신분 중 %	13.3%	56.7%	26.7%	3.3%	0.0%	100.0%	
	감사준비 중 %	33.3%	24.6%	12.5%	2.9%	0.0%	15.9%	
전체 중 %		2.1%	9.0%	4.2%	0.5%	0.0%	15.9%	2.78
계 (N=189)	빈도	12	69	64	35	9	189	
	신분 중 %	6.3%	36.5%	33.9%	18.5%	4.8%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6.3%	36.5%	33.9%	18.5%	4.8%	100.0%	

P<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42.258a	12	P<0.01

20)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비협조 정도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비협조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2.87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96,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2.91, 본청 공무원은 2.90, 공공기관 임직원은 2.63으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이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12.321, P<4.27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5-20.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비협조 정도 평균값〉



〈표 5-23.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비협조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1	10	20	15	4	50	2.96
	신분 중 %	2.0%	20.0%	40.0%	30.0%	8.0%	100.0%	
	감사준비 중 %	8.3%	14.5%	31.3%	42.9%	44.4%	26.5%	
	전체 중 %	0.5%	5.3%	10.6%	7.9%	2.1%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0	5	15	13	3	36	2.91
	신분 중 %	0.0%	13.9%	41.7%	36.1%	8.3%	100.0%	
	감사준비 중 %	0.0%	7.2%	23.4%	37.1%	33.3%	19.0%	
	전체 중 %	0.0%	2.6%	7.9%	6.9%	1.6%	19.0%	
본청 공무원	빈도	7	37	21	6	2	73	2.90
	신분 중 %	9.6%	50.7%	28.8%	8.2%	2.7%	100.0%	
	감사준비 중 %	58.3%	53.6%	32.8%	17.1%	22.2%	38.6%	
	전체 중 %	3.7%	19.6%	11.1%	3.2%	1.1%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4	17	8	1	0	30	2.63
	신분 중 %	13.3%	56.7%	26.7%	3.3%	0.0%	100.0%	
	감사준비 중 %	33.3%	24.6%	12.5%	2.9%	0.0%	15.9%	
	전체 중 %	2.1%	9.0%	4.2%	0.5%	0.0%	15.9%	
계 (N=189)	빈도	12	69	64	35	9	189	2.87
	신분 중 %	6.3%	36.5%	33.9%	18.5%	4.8%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6.3%	36.5%	33.9%	18.5%	4.8%	100.0%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2.231a	12	P<4.27

21) 감사 시기 조정 필요성

감사 시기의 조정 필요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12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12, 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3.26, 본청 공무원은 3.28, 공공기관 임직원은 3.0으로 감사 시기 조정 필요성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이 낮게 나타났다.

응답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14.015, P<3.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표 5-24. 감사 시기 조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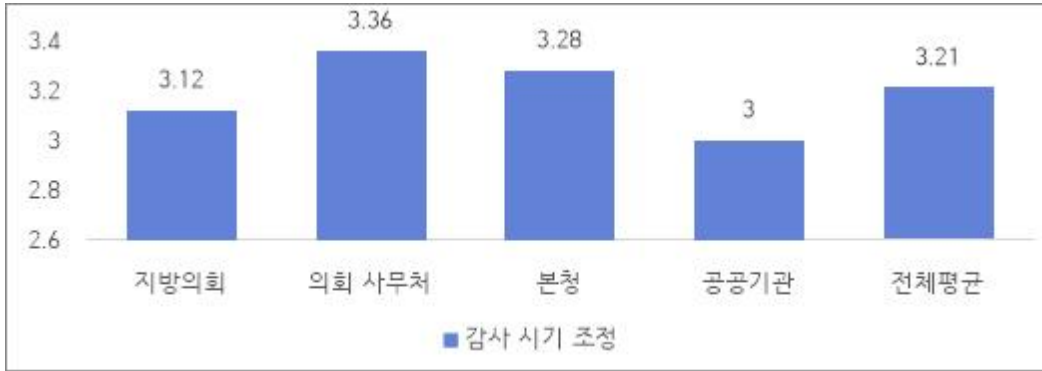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1	12	18	18	1	50	3.12
	신분 중 %	2.0%	24.0%	36.0%	36.0%	2.0%	100.0%	
	감사준비 중 %	100.0%	32.4%	22.0%	30.5%	10.0%	26.5%	
	전체 중 %	0.5%	6.3%	9.5%	9.5%	0.5%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0	7	12	14	3	36	3.36
	신분 중 %	0.0%	19.4%	33.3%	38.9%	8.3%	100.0%	
	감사준비 중 %	0.0%	18.9%	14.6%	23.7%	30.0%	19.0%	
	전체 중 %	0.0%	3.7%	6.3%	7.4%	1.6%	19.0%	
본청 공무원	빈도	0	12	34	21	6	73	3.28
	신분 중 %	0.0%	16.4%	46.6%	28.8%	8.2%	100.0%	
	감사준비 중 %	0.0%	32.4%	41.5%	35.6%	60.0%	38.6%	
	전체 중 %	0.0%	6.3%	18.0%	11.1%	3.2%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0	6	18	6	0	30	3.0
	신분 중 %	0.0%	20.0%	60.0%	20.0%	0.0%	100.0%	
	감사준비 중 %	0.0%	16.2%	22.0%	10.2%	0.0%	15.9%	
	전체 중 %	0.0%	3.2%	9.5%	3.2%	0.0%	15.9%	
계 (N=189)	빈도	1	37	82	59	10	189	3.21
	신분 중 %	0.5%	19.6%	43.4%	31.2%	5.3%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0.5%	19.6%	43.4%	31.2%	5.3%	100.0%	

P<3.00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4.015a	12	P<3.00

〈그림 5-21. 감사 시기 조정의 필요성 평균값〉



22) 감사 기간 연장 필요성

감사 기간 연장 필요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2.5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34, 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2.55, 본청 공무원은 2.05, 공공기관 임직원은 2.20으로 감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14.015,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표 5-25. 감사 기간 연장 필요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0	11	13	24	2	50	3.34
	신분 중 %	0.0%	22.0%	26.0%	48.0%	4.0%	100.0%	
	감사준비 중 %	0.0%	17.2%	24.5%	66.7%	100.0%	26.5%	
전체 중 %		0.0%	5.8%	6.9%	12.7%	1.1%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5	13	11	7	0	36	2.55
	신분 중 %	13.9%	36.1%	30.6%	19.4%	0.0%	100.0%	
	감사준비 중 %	14.7%	20.3%	20.8%	19.4%	0.0%	19.0%	
전체 중 %		2.6%	6.9%	5.8%	3.7%	0.0%	19.0%	
본청 공무원	빈도	23	26	21	3	0	73	2.05
	신분 중 %	31.5%	35.6%	28.8%	4.1%	0.0%	100.0%	
	감사준비 중 %	67.6%	40.6%	39.6%	8.3%	0.0%	38.6%	
전체 중 %		12.2%	13.8%	11.1%	1.6%	0.0%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6	14	8	2	0	30	2.20
	신분 중 %	20.0%	46.7%	26.7%	6.7%	0.0%	100.0%	
	감사준비 중 %	17.6%	21.9%	15.1%	5.6%	0.0%	15.9%	
전체 중 %		3.2%	7.4%	4.2%	1.1%	0.0%	15.9%	
계 (N=189)	빈도	34	64	53	36	2	189	2.51
	신분 중 %	18.0%	33.9%	28.0%	19.0%	1.1%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18.0%	33.9%	28.0%	19.0%	1.1%	100.0%	

$P < 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59.185a	12	P<0.01

〈그림 5-22. 감사 기간 연장 필요성 평균값〉



23) 감사 보좌인력 확충 필요성

감사 보좌 인력 확충 필요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려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40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4.38,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4.02, 본청 공무원은 2.65, 공공기관 임직원은 2.86으로 감사 보좌인력 확충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95.338,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표 5-26. 감사 보좌인력 확충 필요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의회 의원	빈도	0	0	4	23	23	50	4.38
	신분 중 %	0.0%	0.0%	8.0%	46.0%	46.0%	100.0%	
	감사준비 중 %	0.0%	0.0%	9.1%	34.3%	65.7%	26.5%	
	전체 중 %	0.0%	0.0%	2.1%	12.2%	12.2%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2	0	4	19	11	36	4.02
	신분 중 %	5.6%	0.0%	11.1%	52.8%	30.6%	100.0%	
	감사준비 중 %	11.8%	0.0%	9.1%	28.4%	31.4%	19.0%	
	전체 중 %	1.1%	0.0%	2.1%	10.1%	5.8%	19.0%	

본청 공무원	빈도	12	20	23	17	1	73	2.65
	신분 중 %	16.4%	27.4%	31.5%	23.3%	1.4%	100.0%	
	감사준비 중 %	70.6%	76.9%	52.3%	25.4%	2.9%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3	6	13	8	0	30	2.86
	신분 중 %	10.0%	20.0%	43.3%	26.7%	0.0%	100.0%	
	감사준비 중 %	17.6%	23.1%	29.5%	11.9%	0.0%	15.9%	
계 (N=189)	빈도	17	26	44	67	35	189	3.40
	신분 중 %	9.0%	13.8%	23.3%	35.4%	18.5%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9.0%	13.8%	23.3%	35.4%	18.5%	100.0%	

P<0.01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95.338a	12	P<0.01

〈그림 5-23. 감사 보좌인력 확충 필요성 평균값〉



24) 수감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강한 제재 필요성

수감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강한 제재 필요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25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4.04,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86, 본청 공무원은 2.65, 공공기관 임직원은 2.66으로 감사 보좌인력 확충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85.482,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5-23. 수감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강한 제재 필요성 평균값〉



〈표 5-27. 수감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강한 제재 필요성〉

구분		강한 제재 필요성					전체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회 의원	빈도	0	0	8	32	10	50	4.04
	신분 중 %	0.0%	0.0%	16.0%	64.0%	20.0%	100.0%	
	감사준비 중 %	0.0%	0.0%	13.1%	46.4%	55.6%	26.5%	
	전체 중 %	0.0%	0.0%	4.2%	16.9%	5.3%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0	1	9	20	6	36	3.86
	신분 중 %	0.0%	2.8%	25.0%	55.6%	16.7%	100.0%	
	감사준비 중 %	0.0%	4.0%	14.8%	29.0%	33.3%	19.0%	
	전체 중 %	0.0%	0.5%	4.8%	10.6%	3.2%	19.0%	
본청 공무원	빈도	11	19	29	12	2	73	2.65
	신분 중 %	15.1%	26.0%	39.7%	16.4%	2.7%	100.0%	
	감사준비 중 %	68.8%	76.0%	47.5%	17.4%	11.1%	38.6%	
	전체 중 %	5.8%	10.1%	15.3%	6.3%	1.1%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5	5	15	5	0	30	2.66
	신분 중 %	16.7%	16.7%	50.0%	16.7%	0.0%	100.0%	
	감사준비 중 %	31.3%	20.0%	24.6%	7.2%	0.0%	15.9%	
	전체 중 %	2.6%	2.6%	7.9%	2.6%	0.0%	15.9%	
계 (N=189)	빈도	16	25	61	69	18	189	3.25
	신분 중 %	8.5%	13.2%	32.3%	36.5%	9.5%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8.5%	13.2%	32.3%	36.5%	9.5%	100.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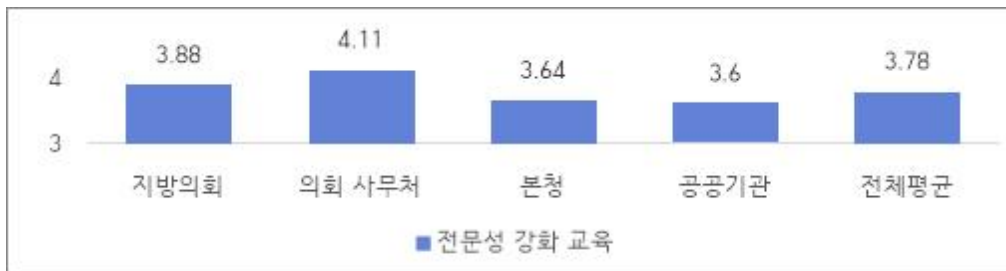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85.482a	12	P<0.01

25) 전문성 강화 교육 필요성

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78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88,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4.11, 본청 공무원은 3.64, 공공기관 임직원은 3.60으로 감사 보좌인력 확충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5-25. 전문성 강화 교육 필요성 평균값〉



〈표 5-28. 전문성 강화 교육 필요성〉

구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렇다	매우	전체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의회 의원	빈도	0	2	8	34	6	50	3.88
	신분 중 %	0.0%	4.0%	16.0%	68.0%	12.0%	100.0%	
	감사준비 중 %	0.0%	28.6%	15.7%	36.2%	17.6%	26.5%	
	전체 중 %	0.0%	1.1%	4.2%	18.0%	3.2%	26.5%	
의회 사무처 공무원	빈도	0	1	7	15	13	36	4.11
	신분 중 %	0.0%	2.8%	19.4%	41.7%	36.1%	100.0%	
	감사준비 중 %	0.0%	14.3%	13.7%	16.0%	38.2%	19.0%	
	전체 중 %	0.0%	0.5%	3.7%	7.9%	6.9%	19.0%	
본청 공무원	빈도	2	2	28	29	12	73	3.64
	신분 중 %	2.7%	2.7%	38.4%	39.7%	16.4%	100.0%	
	감사준비 중 %	66.7%	28.6%	54.9%	30.9%	35.3%	38.6%	
	전체 중 %	1.1%	1.1%	14.8%	15.3%	6.3%	38.6%	
공공기관 임직원	빈도	1	2	8	16	3	30	3.60
	신분 중 %	3.3%	6.7%	26.7%	53.3%	10.0%	100.0%	
	감사준비 중 %	33.3%	28.6%	15.7%	17.0%	8.8%	15.9%	
	전체 중 %	0.5%	1.1%	4.2%	8.5%	1.6%	15.9%	
계 (N=189)	빈도	3	7	51	94	34	189	3.78
	신분 중 %	1.6%	3.7%	27.0%	49.7%	18.0%	100.0%	
	감사준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1.6%	3.7%	27.0%	49.7%	18.0%	100.0%	

P<0.19

〈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24.140a	12	P<0.19

4. 분석 결과 종합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한 조사대상자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응답자(N=189)의 68.8%(130명)가 ‘집행부의 감시 및 통제’라고 답했으며, 12.2%(23명)는 ‘의원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10.1%(19명)는 ‘자치단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6.3%(12명)은 ‘주민의 이익반영’을, 2.6%(5명)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순으로 응답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과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에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자의 39.2%(74명)는 ‘예산 비효율’을, 근소한 차이로 38.6%(37명)는 ‘잘못된 정책 방향’, 10.1%(19명)는 ‘법령/규정 위반’, 7.9(15명)은 ‘근무행태상 비위나 부정’, 4.2%(8명)은 절차미준수를 지적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가 의회의 기능과 위상제고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 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03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4.0,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02, 본청 공무원은 2.46, 공공기관 임직원은 2.83으로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에 대한 인식은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19.129,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감사의 절차에 대한 피감기관 의견 반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2.7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38,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2.06, 본청 공무원은 2.32, 공공기관 임직원은 2.40으로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에 대한 인식은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45.862,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감사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정보의 비밀 유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29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4.22,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38, 본청 공무원은 2.78, 공공기관 임직원은 2.86로 감사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 비밀 유지 인식은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67.591, $P<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의원의 감사 전문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2.67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52, 의회사무

처 공무원은 2.88, 본청 공무원은 2.08, 공공기관 임직원은 2.43으로 의원의 감사 전문성의 인식은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68.961,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감사가 정해진 규정대로 준수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3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71,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55, 본청 공무원은 2.86, 공공기관 임직원은 3.31로 감사가 규정대로 준수의 인식은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48.637,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감사 시간의 충분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3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70,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27, 본청 공무원은 3.13, 공공기관 임직원은 3.06으로 감사 시간의 충분성의 인식은 본청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3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80,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2.91, 본청 공무원은 3.50, 공공기관 임직원은 3.53으로 감사 시간의 충분성의 인식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29.114, $P < 0.00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증언 및 의견진술의 원활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7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04,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13, 본청 공무원은 3.16, 공공기관 임직원은 3.46으로 증언 및 의견진술의 원활에 관한 인식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행정업무 개선의 도움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00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80,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41, 본청 공무원은 2.39, 공공기관 임직원은 2.63으로 행정업무의 개선에 도움 정도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77.109,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반영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40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42,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36, 본청 공무원은 3.35, 공공기관 임직

원은 3.53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반영 정도에 관한 인식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77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4.08,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4.02, 본청 공무원은 3.41, 공공기관 임직원은 3.38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정도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15.559,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감사 지적에 따른 업무추진 위축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08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48,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2.72, 본청 공무원은 3.53, 공공기관 임직원은 3.46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위축 정도에 관한 인식은 본청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15.559,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 도움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73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4.06,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88, 본청 공무원은 3.42, 공공기관 임직원은 3.73으로 감사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정도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28.852, $P<0.0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감사와 무관한 질문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2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42,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2.97, 본청 공무원은 3.71, 공공기관 임직원은 3.60으로 감사 범위와 무관한 질문을 하는 정도에 관한 인식은 본청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54.986,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중복감사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37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70,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22, 본청 공무원은 3.79, 공공기관 임직원은 3.63으로 중복감사 정도에 관한 인식은 본청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38.520,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관계없는 자료요구 정도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2.42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42,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02, 본청 공무원은 3.90, 공공기관 임직원은 3.63으로 감사와 관계없는 자료요구에 관한 인식은 본청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74.308,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자료 제공 비협조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2.78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22,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38, 본청 공무원은 2.42, 공공기관 임직원은 2.20으로 자료 비협조 제공 정도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이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42.258,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비협조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2.87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2.96,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2.91, 본청 공무원은 2.90, 공공기관 임직원은 2.63으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은 낮게 나타났다.

감사 시기의 조정 필요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12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12,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26, 본청 공무원은 3.28, 공공기관 임직원은 3.0으로 감사 시기 조정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은 낮게 나타났다.

감사 기간 연장 필요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2.51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34,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2.55, 본청 공무원은 2.05, 공공기관 임직원은 2.20으로 감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14.015,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감사 보좌 인력 확충 필요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40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4.38,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4.02, 본청 공무원은 2.65, 공공기관 임직원은 2.86으로 감사 보좌인력 확충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95.338,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수감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강한 제재 필요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25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4.04,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3.86, 본청 공무원은 2.65, 공공기관 임직원은 2.66으로 감사 보좌인력 확충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청 공무원은 낮게 나타났다. 응답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값이 85.482,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값은 3.78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평균값이 3.88,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4.11, 본청 공무원은 3.64, 공공기관 임직원은 3.60으로 감사 보좌인력 확충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은 낮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설명한 각 문항 별 분석의 전체 결과는 아래 <표 5-29>와 같다.

<표 5-29. 감사에 대한 인식 평균비교(3-25문항)>

구분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의회사무처 공무원	본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평균
사전준비	4.0	3.02	2.46	2.83	3.03
의견반영	3.38	2.86	2.32	2.40	2.71
비밀유지	4.22	3.38	2.78	2.86	3.29
전문성	3.52	2.88	2.08	2.43	2.67
규정 준수	3.76	3.55	2.86	3.40	3.31
감사 시간	2.70	3.27	3.13	3.06	3.03
자료관련성	2.80	2.91	3.50	3.53	3.21
의견진술	3.04	3.13	3.16	3.46	3.17
업무개선	3.80	3.41	2.39	2.63	3.00
시정조치	3.42	3.36	3.35	3.53	3.40
처리결과확인	4.08	4.02	3.41	3.83	3.77
업무추진 위축	2.48	2.72	3.53	3.46	3.08
의회권한 강화	4.06	3.88	3.42	3.73	3.73

무관한 질문	2.42	2.97	3.71	3.60	3.21
중복감사	2.70	3.22	3.79	3.63	3.37
무관한 자료요구	2.42	3.02	3.90	3.63	3.30
자료비협조	3.22	3.38	2.43	2.20	2.78
의견진술 비협조	2.96	2.91	2.90	2.63	2.87
감사 시기 조정	3.12	3.36	3.28	3.0	3.21
감사 기간 연장	3.34	2.55	2.05	2.20	2.51
보좌인력 확충	4.38	4.02	2.65	2.86	3.40
수감기관제재	4.04	3.86	2.65	2.66	3.25
전문성 강화 교육	3.88	4.11	3.64	3.60	3.78

VI.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1. 의회와 집행부간의 인식 차이

설문조사 결과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사전 감사 준비, 감사의 절차에 대한 피감기관 의견 반영, 감사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정보의 비밀 유지, 의원의 감사 전문성, 감사가 정해진 규정대로 준수, 행정업무 개선의 도움 정도, 자료 제공 비협조 정도, 수감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강한 제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본청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감사 시간의 충분성,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의 관련성, 감사 지적에 따른 업무추진 위축 정도, 감사와 무관한 질문 정도에 대한 인식은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본청 공무원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증언 및 의견진술의 원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반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정도, 서울특별시의회 권한 강화 도움 정도, 감사 시기의 조정 필요성, 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비협조 정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중복감사 정도, 관계없는 자료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의원은 낮게 나타났으나 의회사무처 공무원과 집행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감사 기간 연장 필요성, 감사 보좌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은 높게 나타났으나 의회사무처 공무원과 집행부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

2. 감사 시간/기간의 불충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감사 시간과 기간이 짧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 감사자료의 불충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감사를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비협조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감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이 대체로 비협조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5. 집행부 측의 의견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여전히 감사와 무관한 질문, 중복감사, 관계없는 자료요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Ⅶ. 행정사무감사의 개선방안

1. 감사 기간 횡수 확대 검토

현행 연간 14일의 감사 기간에 대해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 기간 및 횡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상시감사, 수시 감사제도의 도입 검토의견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양이 엄청나게 많기도 하지만 업무의 성격이 예산을 수반하는 집행업무가 많다. 이의 검토·확인 은 중앙부처의 굵직한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적이고 복잡한 도시행정 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감사 시기가 연말에 가까운 정기회 기간동안 1차례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발견이 어려우며,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에 의한 감사는 연 2회로 하고, 시기와 기간은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감사 방법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전체 서울특별시 감사 대상기관을 매년 감사하려고 하기보다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2년에 한 번 실시한다든지, 전체 감사 대신 표본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감사 방법 및 정보 채널의 다양화

현재 의회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질문답변 형식, 현장 확인 방법, 서류감사 등이다. 감사 대상 사무에 따라 어떠한 감사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질문답변 형식을 중심으로 하는 감사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더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현장 확인 감사나 증거 제출 및 대안제시형 감사보다는 질문답변식 혹은 서류제출형의 감사가 많다는 것은 감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만큼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설득력이 적은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란 현장 행정을 직접 감독한다는 데 그 의의가 더 크기 때문이다.

대체로 응답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활용하는 정보매체가 주로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보고서, 지침서, 예산서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회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의원과 의회사무처가 스스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정책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의원 정책연구회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중점감사사항에 대한 연구회 모임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자료 검토가 요망된다.

3. 감사의 전문성 제고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구성단계에서부터 어떤 위원을 어느 위원회에 배치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집행기관을 감사하는 제도는 상임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야기되는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문성을 업무의 수행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전문성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자제감사학회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uditors)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분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⁸⁾ 즉, ① 감사이론과 절차에 관한 기본지식, ② 관리체제와 관리통제체제에 관한 기초지식, ③ 회계이론, 방법 및 용어에 관한 기초지식, ④ 정부감사와 관련된 분야(경제학, 통계학, 기업법, 컴퓨터체제, 계량분석)에 관한 이해와 적용능력, ⑤ 정부가 따라야 할 현행 입법, 사법, 행정적 규정이나 지침에 관한 지식, ⑥ 정보이론과 실제에 관한 지식이 그것이다.

4. 의정보좌인력의 확충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입법, 예산, 행정사무감사, 청원 및 민원처리 등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의정보좌인력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주장과 노력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 환경, 보건, 지역발전 등의 행정 및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의정사무의 확대, 그리고 규모면에서 전체 국가예산의 약 10분의 1을 다루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보좌인력은 집행부나 국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갈수록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4년 임기의 정치적 대표인 의원들의 정보와 자료 수집 방법, 의정활동 시간, 정책적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회 각 정책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을 포함

8)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uditors, *Internal Auditing In State Government*, 1973, pp. 14-15.

한 의정보좌기구의 기능과 인력확충이 필요한 과제이다.

5. 감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협력관계

피감기관인 집행부는 의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답변을 나열하여 초점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평상시에 충분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수행해 온 직무가 과연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로부터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나, 자신이 알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나 행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여전히 감사와 무관한 질문, 중복감사, 관계없는 자료요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배려와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가 과거에 일어난 행위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사결과에 의해 밝혀진 잘못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시정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의미가 크다.

요컨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비판 감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동반자(同業者)로서의 기능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행정과정에 민의와 정책적 아이디어를 투입하는 정책 공론장(共論場)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감사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과 태도의 개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 연구논문

오열근, “지방공사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논문집 제29집

「인문·사회과학」, pp. 383-392, 1995.

유한경,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의원과 공무원의 인식비교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6, 2008.

이황수, “지방의회 사무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 2011.

■ 서울시의회 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31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8년 ~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 ~ 2022년).

■ 기타 참고

감사원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도에 관한 이슈분석, p. 14, 2017.

<https://www.smc.seoul.k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uditors, *Internal Auditing In State Government*, pp. 14-15, 1973.

〈부록〉 설문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의견조사〉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 연구책임 : 한상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 지방자치연구소장
- 연구원 : 서정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응답은 해당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1)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등 동의 여부(수집항목 : 신분, 재직 연차, 지역, 휴대전화 번호)

- ① 동의하지 않습니다. ② 동의합니다.

문2) 귀하의 신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지방의원 ② 사무처 공무원 ③ 본청 공무원
 ④ 지방 출자·출연·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⑤ 일반시민

문3) 재직 연차가 어떻게 됩니까? (숫자만 써주세요. 12개월 미만은 '0'을 기입해주세요.)

지방의원의 경우 선수 : 초선 -> 1, 재선 -> 2 /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문4) 귀하가 소속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경기도 ② 서울특별시 ③ 인천광역시 ④ 그 외 지역

문5)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②	주민의 이익 반영
③	의원의 정치적 입지 강화
④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⑤	자치단체의 사업의 효율성 제고

문6)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은 무엇이였습니까?	
①	법령/규정 위반
②	예산 비효율
③	잘못된 정책 방향
④	절차 미준수
⑤	근무행태상 비위나 부정

문7)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의원들은 사전에 감사 준비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감사의 절차에 대한 피감기관의 의견이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감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의원은 감사 전문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8) 감사 진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감사는 정해진 규정대로 잘 이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사무감사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집행기관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증언 및 의견 진술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9)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무감사가 행정업무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진다.	①	②	③	④	⑤
3. 감사지적 사항의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감사 지적 때문에 신규 사업이나 업무추진이 위축된다.	①	②	③	④	⑤
5.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10) 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감사범위와 무관한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중복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집행기관은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11) 감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행 감사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행 감사 기간을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감사 보좌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수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나 위증, 비협조 등에 대해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판권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제 안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입법담당관)

담 당 자 : 정책기획담당관 송명희 지원관

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 : 한 상 우

연 락 처 : 02-2220-0238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290-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음)